금오공과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1. 4. 19. ~ 4. 30. [10일간]

나. 감사인원 : 14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조직·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산단·연구비	시설·재산	계
지적건수	11	8	12	9	9	49

나. 세부지적 및 처분 : "붙임"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금오공과대학교

여번 지 젘 사 핤 처분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 인정 부적정 1 ○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세부지침」제1조 제1항 및 ○ 경고(4명) 제2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에 ㅇ톳보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 - 채용공고상의 지원 논문이외에 최근 4년 이내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의 자격과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임용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이고, 자격 및 「교원신규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전 15일 채용 세부지침 의 지원 자격을 통일 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등에 채용업무의 시켜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 혼성을 방지하기 바람 하여야 하며, 전공심사의 연구 및 산학협력실적의 양적심사는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채용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기준은 별첨2(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물 양적 평가기준)를 적용하며,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본교 교육공무원임용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연구실적물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제21조,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르면 신규임용의 공동연구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 석사학위 취득 논문 100%, 박사학위 취득 논문 200%, 3인 이상의 공동연구 논문의 주저자일 경우 저자 수에 관계없이 70%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의 건축계획·설계분야 및 산학공학부의 디 자인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은 [별표3]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되, 전시회 출품은 국제 1회당 70%,

국내 1회당 50%로 산정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 교수로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최근 4년 이내 4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하며, 「2020학년도 1학기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2019-48호)」에 따르면 지원자격 공통사항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2015.11.13.~2019.11.12.) 발표된 연구실적물(최종학위 논문 포함)이 400% 이상인 자(본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공동연구 실적물 인정 환산율 적용)와 접수 마감일을 기준 으로 최근 4년 이내 주저자급 논문 2편 이상 있는 자이며, 연구실적물 미제출시 해당부분의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설계 및 건축계획 관련 지원자는 논문 이외에 최근 4년 이내에 건축설계 작품을 제출 하되, 건축설계작품은 기타 전시발표 및 창작 실적과 함께 포트폴리오(작품집)에 수록하고, 포트폴리오 1부를 건축 설계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처는 2019. 10. 29. '20학년도 1학기 ▼부 교수초빙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공통사항을 접수 마감(2019.11.12.)일 기준으로 「금오 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 포함)이 400% 이상인 자와 최근 4년 이내 주저자급 논문 2편 이상 있는 자로 공고하고도, 2019. 11. 26. 서류심사 시「금오공과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주저자급 논문 2편 이상 기준충족 여부만 확인하여 적격으로 판단하고, 기초·전공·공개강의 결과 종합순위 1순위자인 A이 면접을 포기 (2020.1.14.)하자 2순위자인 B 단독 면접을 실시 (2020.1.15.)하여 합격처리 하였으나, 기 접수된 연구실적물이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임용기준(400%)에 미달(380%)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B에게 2020. 1. 17. 연구실적물(전시작품 등) 추가	
제출을 안내하여 2020. 1. 19. 이메일로 제출받아(당시	
미국 거주) 2020. 1. 22.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후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임용예정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참고>

지원자 B 연구실적물 인정률 현황

구분	논문명	채용심사기준 인정률	임용기준 인정률	비고
	-	105%	70%	2인
	-	105%	70%	2인
당초 제출서류 (2019.11.8.)	-	105%	70%	2인
(2019.11.8.)	-	105%	70%	2인
	-	0%	100%	
	소 계	420%	380%(미충족)	
	-	-	70%	단독
추가 제출서류 (2020.1.19.)	-	-	70%	단독
	소 계	-	140%	
합계		420%	520%(충족)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의 이해관계자 미신고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ㅇ경고(1명)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단 ▽장 ▷과 C는 2020. 12. 18. △단	
	전문계약직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	
	제자인 AP 학생이 응시했음에도 총장에게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5개 평정	
	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우수)'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д г.	

지 적 사 항	처 분
◁원(계약직 채용) 응시자격 우대사항 부적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 경고(3명)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ㅇ주의(1명)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용자는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병력	
(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6. 10. < 원 관리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의 우대사항으로 '신체 건강한 자, 야외 활동	
가능한 자, 채용예정 담당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승합차 및 트럭 소지자'등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고한 다음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위 연수원에 재직 중이면서 '승합차	
및 트럭' 소지자인 D을 채용한 사실이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용자는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병력(病)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6. 1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주의(4명)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금오공과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세부지침」제7조에 따르면 기초	
	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대표실적물과 채용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15점) 총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은	
	'적격'으로, 1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E는 2020학년도 2학기와	
	2021학년도 1학기 ◇과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기초심사 2개 항목(30점)	
	중 최종학위논문과 채용전공분야의 전공일치도 여부	
	(15점)를 심사하면서, 지원자 F에 대하여 위 각각의	
	전임교원 채용 공고상 채용 전공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이	
	동일한데도,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의 전공일치도	
	(15점)에서 2020학년도 2학기는 '15점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15점 만점'에	
	'9점'으로 적격 평가하는 등 【붙임】"2회 이상 신규	

채용 지원자 기초심사{최종학위논문 전공일치도(15점)} 평가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에 ◇과에 지원한 위 F 등 4명에 대하여 위 E 등 기초심사위원 4명은 각각의 채용 공고상 채용 전공분야와최종학위논문이 동일한데도,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분야의 전공일치도(15점)에서 2020학년도 2학기는 '15점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15점 만점'에 '9점'으로 적격 평가한 사실이 있음.	
◇과에 지원한 위 F 등 4명에 대하여 위 E 등 기초 심사위원 4명은 각각의 채용 공고상 채용 전공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이 동일한데도,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 분야의 전공일치도(15점)에서 2020학년도 2학기는 '15점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심사위원 4명은 각각의 채용 공고상 채용 전공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이 동일한데도,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 분야의 전공일치도(15점)에서 2020학년도 2학기는 '15점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최종학위논문이 동일한데도, 최종학위논문과 채용 전공 분야의 전공일치도(15점)에서 2020학년도 2학기는 '15점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분야의 전공일치도(15점)에서 2020학년도 2학기는 '15점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만점'에 '0점'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고, 2021학년도 1학기는	

2회 이상 신규채용 지원자 기초심사(최종학위논문 전공일치도(15점)) 평가 현황

			2020학년도 2학기					2021	.학년도 1	학기	
연번	성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비고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비고
		E	P	-	-	비亚	Е	P	-	-	비꼬
1	F	0	0	0	0	부적격	9	9	9	9	적격
2	-	0	0	0	0	부적격	9	9	9	9	적격
3	-	0	0	0	0	부적격	9	9	9	9	적격
4	-	0	0	0	0	부적격	9	9	9	9	적격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ㅇ 기관주의
	oxdots (임용시험). $oxdots$ (임용시험 일반). 다(시험위원의 위촉)에	
	따르면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	
	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7. 24. 신규채용(전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 주관 소속 부서장이 포함된 내부직원 3명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붙임】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등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7. 부터 2021. 1.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그 중 1명은 시험 주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등 부적정 현황

연번	연도	건명	채용직종	채용분야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면접일시	면접위 내부	원 현황 외부	면접 심사위원 (소속,직급)
1	2018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사서) 전입 공고	일반직	사서8~9급	1	5	2018.7.24.	3	0	-
2	2019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1	2	2019.2.13.	3	0	-
3	2019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1	1	2019.6.3.	3	0	-
4	2019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 전입 공고	일반직	전산8급	1	1	2019.8.20.	2	1	-
5	2019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2	2	2019.8.20.	2	1	-
6	2019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환경) 전입 공고	일반직	환경8급	1	3	2019.12.23.	3	0	-
7	2019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1	1	2020.1.7.	3	0	-
8	2020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1	2	2020.6.23.	3	0	-
9	2020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2	2	2020.7.24.	2	1	-
10	2020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시설) 전입 공고	일반직	시설8급	1	1	2020.9.18.	2	1	-
11	2020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임업) 전입 공고	일반직	임업8급	1	4	2020.10.30.	2	1	-
12	2020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행정) 전입 공고	일반직	행정9급	1	1	2020.12.4.	2	1	-
13	2021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 전입 공고	일반직	공업8급	1	1	2021.1.29.	2	1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제7조, 제9조,	ㅇ 경고(1명)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ㅇ 주의(3명)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	ㅇ 시정(회수)
	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무일은	-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과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수령액 합계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09:00	2,156,130원을 당사자 4명에게 회수하여
	부터 18:00시까지로 하며,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관련회계에 세입
	한도로 직원의 신청과 부서장의 동의로 실시한다고	조치하기 바람
	되어 있고, 「금오공과대학교 △단 취업규칙」제16	
	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며, 소속부서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고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외출은	
	무단이탈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G는 2018. 3. 8. 18:00부터 21:00시	
	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2018	
	학년도 1학기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과목 3시간을 수강하는 등 【붙임1】"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무 미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G 등 4명은 초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거나 근무시간 중 복무	
	처리 없이 대학원 석·박사과정 7개 과목 합계 106	
	시간(복무 미처리 7일)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 위 G는 2018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과목	
	수강시간에 해당 초과근무수당 합계 636,70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2】"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과다수령 내역"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	
	까지 위 G 등 4명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470,850원을 과다 지급받거나 근무시간 중 복무	
	처리 없이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시간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 합계 685,280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붙임1】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무 미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학위 과정	과목명	년도-학기	수업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연가 미처리일)	
				-	2010 1	화 (18:00-20:40)	40.2] 7].	
				-	2018-1	목 (18:00-20:40)	- 49시간	
◇과	-	G	석사	-	2010.2	월 (18:55-21:35)	45시간	
				-	2018-2	수 (14:00~16:50)	(5일)	
					94시간 (5일 2시간 30분)			
_	ı	ı	석사	-	2018-1	화 (18:00~20:40)	3시간	
				:	소계		3시간	
△단	-	-	석사	-	2018-1	급 (18:00-19:45)	9시간	
				:	소계		9시간	
△단	-	-	박사	-	2018-1	화 (11:00-12:50)	(2일)	
				:	소계		(2일)	
	106시간 (7일)							

【붙임2】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과다수령 내역

O 초과근무수당

(단위:원)

				3 J J D	무단	이탈	
소속	직급	성명	연도 (학기)	초과근무 수당단가	대학원 수강시간	초과근무 수령액	과다 수령액
			2018 (1학기)	12,994	49	636,700	4 005 040
-		G	2018 (2학기)	13,412	45	600,610	1,237,310
			소	계	94	1,237,310	1,237,310
-	-	-	2018 (1학기)	19,353	3	96,760	96,760
			소 계		3	96,760	96,760
_			2018 (1학기)	15,198	9	136,780	136,780
			소	소 계		136,780	136,780
		합 계			106	1,470,850	1,470,850

○ 연가보상비

(단위:원)

소속	직급	성명	연도	법정 연가 일수	연가 사용일	잔여 연가 일수 (A)	연가 미허가 일수 (B)	법령상 잔여 연가 일수 (A-B)	실제 수령한 연가 보상비	법령상 연가 보상비	과다 수령액
-	-	G	2018	17	9	10	5	4	717,750	287,100	430,650
-	-	-	2018	16	10	6	2	4	759,890	505,260	254,630
	합계									792,360	685,28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ㅇ주의(16명)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제18조에 의하면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H은 2018. 4. 28.부터 2018. 4. 30.	
	까지 소속 학과장 허가 없이(연가 미사용 1일)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학기 중 교원 공무	
	외 국외여행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내역"과 같이	
	2018.4.부터 2021.4.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6	
	명은 총 26회에 걸쳐 소속 학부(과)장 허가 없이 학기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길게는 7일에서	
	짧게는 1일까지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학기중 교원 공무외 국외여행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내역

연번	학과	직급	성명	출입극	국내 역	여행목적	여행지	연가신청일	연가 미신청일	부서장	복무미처리
전 번	딱딱	식표	'প 'ব	출국일	입국일	প্ৰদ্ৰ	역행시	원가선정될	전기 미선정철	허가여부	목구비시티
1	♡과	-	Н	2018-04-28	2018-04-30	-	-		2018-04-30	미허가	1
2	♡과	-	Н	2018-05-09	2018-05-13	-	-	2018-05-10~2018-05-11	2018-05-09	미허가	1
3	♡과	-	Н	2019-04-06	2019-04-08	-	-		2019-04-08	미허가	1
4	♡과	-	Н	2019-04-19	2019-04-21	-	-		2019-04-19	미허가	1
5	♡과	-	Н	2019-12-05	2019-12-08	-	-	2019-12-06	2019-12-05	미허가	1
6	-	-	-	2019-06-06	2019-06-10	-	-	2019-06-07	2019-06-10	미허가	1
7	◇과	-	-	2018-12-07	2018-12-12	-	-	2018-12-10~2018-12-11	2018-12-07, 2018-12-12	미허가	2
8	◇과	-	N	2019-06-14	2019-06-17	-	-		2019-06-14, 2019-06-17	미허가	2
9	-	-	-	2018-09-21	2018-09-24	-	-		2018-09-21	미허가	1
10	-	-	-	2019-05-02	2019-05-05	-	-		2019-05-02, 2019-05-03	미허가	2
11	-	-	-	2018-10-17	2018-10-28	-	-	2018-10-18~2018-10-26	2018-10-17	미허가	1
12	-	-	-	2019-11-29	2019-12-06	-	-	2019-12-02~2019-12-06	2019-11-29	미허가	1
13	-	-	U	2018-06-14	2018-06-22	-	-		2018-06-14~2018-06-22	미허가	7

연번	학과	직급	성명	출입극	국내역	여행목적	여행지	연가신청일	연가 미신청일	부서장	복무미처리
21	약 각	역표	78 78	출국일	입국일	প্ৰদ্ৰ	প্ৰস	한가선정될	현기 미선정철	허가여부	목구비시티
14	-	-	U	2018-12-15	2018-12-24	-	-		2018-12-17~2018-12-21	미허가	5
15	-	-	U	2019-12-13	2019-12-16	-	-		2019-12-13, 2019-12-16	미허가	2
16	-	-	AM	2019-05-02	2019-05-07	-	-	2019-05-02~2019-05-03	2019-05-07	미허가	1
17	-	-	AM	2019-05-17	2019-05-20	-	-	2019-05-17	2019-05-20	미허가	1
18	-	-	-	2018-04-12	2018-04-15	-	-		2018-04-12, 2018-04-13	미허가	2
19	-	-	-	2019-12-13	2019-12-20	-	-	2019-12-16~2019-12-20	2019-12-13	미허가	1
20	-	-	-	2019-09-26	2019-09-30	-	-	2019-09-26~2019-09-27	2019-09-30	미허가	1
21	-	-	-	2019-05-19	2019-05-22	-	-	2019-05-20~2019-05-21	2019-05-22	미허가	1
22	-	-	-	2019-04-17	2019-04-21	-	-	2019-04-18~2019-04-19	2019-04-17	미허가	1
23	-	-	-	2018-05-24	2018-05-29	-	-		2018-05-24~2018-05-29	미허가	4
24	-	-	-	2018-03-23	2018-03-24	-	-		2018-03-23	미허가	1
25	-	-	-	2019-05-29	2019-06-02	-	-	2019-05-30~2019-05-31	2019-05-29	미허가	1
26	-	-	-	2019-06-13	2019-06-16	-	-		2019-06-13~2019-06-14	미허가	2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8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및「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수부 I은 2019. 6. 24.부터 2019. 8. 26.까지 협업연구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는 등 【붙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1.까지 위 I 등 교원 3명은 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_ ` ` `

【붙임】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현황

ਲੀ ਮੀ	연번 학과	직급	성명	여행	기간	출장목적	출장국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1010	의 역 <i>-</i>	শ អ	78 78	출국일	입국일	2 854	宣る サイド	시발 및 시드림 등록 여부
1	ڼ부	-	I	2019-06-24	2019-08-26	협업연구	-	미제출·미등록
2	△단	-	K	2018-12-19	2019-01-29	공동연구 협의	-	미제출·미등록
3	△단	-	K	2019-06-26	2019-08-14	연구기관 방문 및 공동협력 방안 검토	-	미제출·미등록
4	△단	-	K	2019-12-19	2020-01-27	연구기관 방문 및 공동협력 방안 검토	-	미제출·미등록
5	-	-	-	2020-01-07	2020-01-15	학회참석	-	미제출·미등록

[※] 중복 미제출자 성명 음영 표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지 역 사 왕 채용 전 비위면직 미확인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 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인 경우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10. 5. 육과 L에 대하여 채용전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 【붙임】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조회 미준수 현황"과 같이 위 L등 2명에 대해 채용 이후 길게는 136일 짧게는 17일이 지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한 사실이 있음.	○ 통보 - 채용예정자에 대 하여 비위면직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조회 미준수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	비위면직 여부 확인일자	지연일수	비고
1	유과	-	L	2020-10-05	2021-02-17	136일	
2	1	-	-	2021-02-01	2021-02-17	17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ㅇ기관경고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ㅇ통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제1조의2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교육이수 및 제재 방안을 마련·시행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264명은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붙임1】"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총 624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금오공과대학교 ☆과 M은 2018. 3. 1. 신규 임용된	
	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미이수 하는 등 【붙임2】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위 ☆과 M 등 신규임용자 149명에 대해	
	임용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재까지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년도	교육 대상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이수인원	교육 미이수 인원	비고
1	2018	687	4	423	264	
2	2019	694	3	464	230	
3	2020	649	5	519	130	
합계		2,030	12	1,406	624	

^{※ 4}대 폭력(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모두를 이수할 경우에만 이수인원에 포함

【붙임2】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 현황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일자	지연일수	비고
1	2018	☆과	-	M	2018-03-01	미수료		
2	2018	-	-	-	2018-03-01	2018-10-29	242	
3	2018	-	-	-	2018-03-01	2018-06-26	117	
4	2018	-	-	-	2018-03-01	2018-11-08	252	
5	2018	-	-	-	2018-03-01	2018-11-08	252	
6	2018	-	-	-	2018-03-01	2018-11-08	252	
7	2018	☆과	-	-	2018-04-16	미수료		
8	2018	-	-	-	2018-04-16	2018-10-29	196	
9	2018	-	-	-	2018-05-01	2020-12-28	972	
10	2018	-	-	-	2018-05-18	2018-10-29	164	
11	2018	-	-	-	2018-06-18	2019-11-21	521	
12	2018	-	-	-	2018-07-01	미수료		
13	2018	☆부	-	-	2018-07-02	2019-11-21	507	
14	2018	-	-	-	2018-07-23	2020-12-28	889	
15	2018	♡과	-	-	2018-08-07	미수료		
16	2018	☆과	-	-	2018-09-01	2019-05-16	257	
17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18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19	2018	-	-	-	2018-09-01	미수료		
20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1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2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3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4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5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6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7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8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29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30	2018	☆과	-	-	2018-09-01	2019-05-16	257	
31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ı
32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33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34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35	2018	☆과	-	-	2018-09-01	2019-05-16	257	
36	2018	☆과	-	-	2018-09-01	2019-05-16	257	
37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38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39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0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1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일자	지연일수	비고
42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3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4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5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6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7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48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49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50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51	2018	☆과	-	-	2018-09-01	2019-11-21	446	
52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53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54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55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56	2018	☆과	-	-	2018-09-01	2020-12-28	849	
57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58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59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60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61	2018	☆과	-	-	2018-09-01	미수료		
62	2018	-	-	-	2018-09-01	2018-11-08	68	
63	2018	-	-	-	2018-09-01	2018-11-08	68	
64	2018	-	-	-	2018-09-01	2018-11-08	68	
65	2018	-	-	-	2018-09-01	2018-11-08	68	
66	2018	-	-	-	2018-09-01	2018-11-08	68	
67	2018	-	-	-	2018-09-01	2018-11-08	68	
68	2018	-	-	-	2018-09-03	미수료		
69	2018	-	-	-	2018-10-08	2019-11-21	409	
70	2018	-	-	-	2018-11-01	2019-05-16	196	
71	2018	-	-	-	2018-11-20	미수료		
72	2018	-	-	-	2018-12-01	2019-11-21	355	
73	2018	-	-	-	2018-12-05	미수료		
74	2019	-	-	-	2019-01-01	2019-11-21	324	
75	2019	☆과	-	-	2019-02-01	2019-05-16	104	
76	2019	-	-	-	2019-03-01	2020-12-28	668	
77	2019	-	-	-	2019-03-01	미수료		
78	2019	-	-	-	2019-03-01	2020-10-31	610	
79	2019	-	-	-	2019-03-01	2019-11-21	266	
80	2019	0과	-	-	2019-03-01	2019-11-21	265	
81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2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3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4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5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6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7	2019	-	-	-	2019-03-01	미수료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일자	지연일수	비고
88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89	2019	-	-	-	2019-03-01	2019-11-06	250	
90	2019	-	-	-	2019-03-11	2019-11-21	255	
91	2019	☆과	-	-	2019-03-12	2019-11-21	254	
92	2019	-	-	-	2019-03-12	2019-05-16	65	
93	2019	-	-	-	2019-03-28	2019-11-21	238	
94	2019	-	-	-	2019-04-16	미수료		
95	2019	-	-	-	2019-05-13	2019-11-21	192	
96	2019	-	-	-	2019-05-20	2019-11-21	185	
97	2019	-	-	-	2019-06-10	미수료		
98	2019	-	-	-	2019-07-01	2019-11-21	143	
99	2019	-	-	-	2019-07-01	2019-11-21	143	
100	2019	-	-	-	2019-07-01	2019-11-21	143	
101	2019	☆과	-	-	2019-07-01	2020-10-31	488	
102	2019	-	-	-	2019-08-19	2020-04-06	231	
103	2019	☆과	-	-	2019-09-01	2019-11-21	81	
104	2019	☆과	-	-	2019-09-01	2019-11-21	81	
105	2019	-	-	-	2019-09-01	2019-11-06	66	
106	2019	-	-	-	2019-09-01	2019-11-06	66	
107	2019	-	-	-	2019-09-01	2019-11-06	66	
108	2019	-	-	-	2019-09-01	2019-11-06	66	
109	2019	-	-	-	2019-09-09	2019-11-21	73	
110	2019	-	-	-	2019-09-09	2020-04-06	210	
111	2019	○과	-	-	2019-10-01	2020-04-06	188	
112	2019	-	-	-	2019-10-21	2020-04-06	168	
113	2019	-	-	-	2019-11-01	2020-04-06	157	
114	2019	육과	-	-	2019-12-23	2020-10-31	313	
115	2020	☆과	-	-	2020-01-01	미수료		
116	2020	☆과	-	-	2020-01-01	2020-12-28	362	
117	2020	☆과	-	-	2020-01-01	2020-12-28	362	
118	2020	-	-	-	2020-01-01	미수료		
119	2020	-	-	-	2020-01-01	미수료		
120	2020	-	-	-	2020-01-01	2020-10-28	301	
121	2020	-	-	-	2020-01-01	미수료		
122	2020	☆과	-	-	2020-01-01	2020-12-28	362	
123	2020	-			2020-02-10	미수료		
124	2020	☆과	-	-	2020-02-24	2020-12-28	308	
125	2020	-	-	-	2020-02-24	2020-10-28	247	
126	2020	-			2020-02-24	미수료		
127	2020	육과		-	2020-03-01	미수료		
128	2020	↓ 부	-	-	2020-03-01	2020-05-02	62	
129	2020	-		-	2020-03-01	2020-10-28	241	
130	2020	☆과	-	-	2020-03-12	2020-10-28	230	
131	2020	☆과		-	2020-04-01	미수료		
132	2020	☆과	-	-	2020-04-01	2020-12-28	271	
133	2020	-		-	2020-04-06	2020-12-28	266	

연번	년도	소속	즤	성명	임용일자	교육일자	지연일수	비고
134	2020	☆과	-	-	2020-05-01	미수료		
135	2020	-	-	-	2020-05-20	미수료		
136	2020	☆과	-	-	2020-06-01	2020-12-28	210	
137	2020	☆과	-	-	2020-07-01	2020-12-28	180	
138	2020	-	-	-	2020-07-01	2020-10-28	119	
139	2020	-	-	-	2020-07-01	2020-12-28	180	
140	2020	☆과	-	-	2020-07-01	2020-12-28	180	
141	2020	☆과	-	-	2020-07-01	2020-12-28	180	
142	2020	☆과	-	-	2020-07-01	2020-12-28	180	
143	2020	-	-	-	2020-07-06	2020-12-28	175	
144	2020	-	-	-	2020-07-06	2020-12-28	175	
145	2020	-	-	-	2020-07-28	2020-10-28	92	
146	2020	-	-	-	2020-08-01	2020-10-28	88	
147	2020	육과	-		2020-09-01	미수료		
148	2020	-	-	-	2020-09-01	2020-12-31	121	
149	2020	☆과	-	-	2020-10-05	2020-12-28	84	

717	당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제1조의2 및	ㅇ주의(4명)
	제6조에 따르면 대학지원 장기 국외 연수자로 선정된	○통보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지 체재	- 조기 귀국한 N, Y에 대한 체재비 초과
	기간 1개월당 \$1,000(환율은 최고 1,200원으로 계산)을	수령액 합계 \$1,200에
	지급하되, 출국 시 60%, 중간보고서 접수 후 40%를	대한 반환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지급하며, 이 경비 중 체재기간 변동으로 초과수령한	규정에 따라 회수
	경비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등 적의 조치하기 바람
	- 금오공과대학교 ○과는 2019년도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과 N에게 출국 시 체재비 \$7,200을 지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실 폐쇄로 위 N의 조기귀국	
	[연구장소 변경, 조기귀국(2020. 4. 5., 5개월 단축)]을 승인	
	(2020.4.6)하면서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200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는 등【붙임】"연구년 장기 국외연수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위 N 등	
	교원 2명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연구장소 및 연구	
	기간을 변경 승인하면서 조기귀국에 따른 체재비	
	초과수령액 합계 \$1,200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구년 장기 국외연수 조기귀국자 체재비 미정산 현황

Alui) 노위 리	7] 7	23-124		연구장소 및 기간		الم ترما	실크리제	체재비 반납 미검토 내역		
연번	소속학과	직급	성명	당초	변경	변경 승인 귀:	귀국일	연구과제	지급액	변경액	추과 수령액
1	◇ 과	-	N	- (*19.9.1.~ '20.8.31.)	- (-: '19.9.1.~'20.4.4) (-: '20.4.5.~'20.8.31.)	′20.4.6.	′20.4.5.	-	\$7,200	\$7,000	\$200
2	-	-	Y	′19.9.1.~ ′ 20.8.31. (-)	′19.9.1.~ ′20.8.1. (-)	′20.8.5.	′20.8.2	-	\$12,000	\$11,000	\$1,000
				,	합 계	•			\$19,200	\$18,000	\$1,200

지 적 사 항	처 분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 경고(3명)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제5조,「금오공과대학교 2018	
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2017. 9. 4.)」	
및「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 추가 선발 계획(2017. 9. 21.)」에 따르면, 국외 다른 대학	
에서 교류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익 700점 이상 소지	
등의 어학 성적 기준 및 전 학년 평점 평균 3.0이상의	
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	
학생을 선발 및 추가 선발하면서, 토익 성적이 695점	
으로 어학 성적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O	
(△과, 학번 -)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붙임】	
"해외파견 교환학생 자격 미달자 선발 현황"과 같이	
선말한 사실이 있음.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고,「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제5조,「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 계획(2017. 9. 4.)」및「금오공과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 추가 선발 계획(2017. 9. 21.)」에 따르면, 국외 다른 대학에서 교류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익 700점 이상 소지등의 어학 성적 기준 및 전 학년 평점 평균 3.0이상의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선발 및 추가 선발하면서, 토익 성적이 695점으로 어학 성적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학번 -)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붙임】

해외파견 교환학생 자격 미달자 선발 현황

연번	성명	학번	학과	파견학년도-학기 (파견기간)	국가 (파견대학)	어학성적 (기준: 토익 700이상)	이전학기까지 평점 평균 (기준: 3.0이상)	비고
1	O	-	▲ 과	2018학년도 1학기 (2018.3.~2018.8.)	-	695	3.76	어학성적 기준미달
2	-	-	-	2018학년도 1학기 (2018.3.~2018.8.)	-	435	3.46	어학성적 기준미달
3	-	-	-	2018학년도 1학기 (2018.3.~2018.8.)	-	430 (토익스피킹 환산점수)	3.33	어학성적 기준미달
4	-	-	-	2018학년도 1학기 (2018.3.~2018.8.)	-	875	2.96	학업성적 요건미달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대학입학전형 친인척 신고서 평가종료 후 제출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주의(1명)
	'17. 10. 10.)」 및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 7. 24.)」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회피 자진신고 대상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으로	
	정하고, 신고 시기는 전형이 실시 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 전, 평가 진행 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18. 7. 30.)" 및 "금오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지원자 친인척 조사(18. 7. 31.)	
	및 재조사('18. 9. 3.)"에 따르면, 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은	
	본인의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하는 경우 자진	
	신고 기간('18. 8. 1.~'18. 9. 20.)에 회피 신청을 위한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P*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전형에서 자신과 4촌 관계인 Q(수험번호: -, 교과전형	
	합격)이 ◇과에 지원하여 회피 자진신고 대상임에도	
	'친인척 신고서'를 정해진 기간('18. 8. 1.~'18. 9. 20.)에	
	제출하지 않고, 전형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2018.	
	12. 26.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동 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기한 미준수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 경고(3명)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모집요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및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에 따르면,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의 원본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 기한('17. 12. 7.) 내에 제출하지 않은	
	R에게 위 전형의 서류제출 마감일이 지난 2018. 1. 8.에	
	영어능력시험 성적(IELTS 6.0)을 제출하도록 하여 합격	
	처리하는 등 【붙임】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영어	
	능력시험 성적 기한 내 미제출 현황"과 같이 위 R 등	
	13명을 서류제출 마감 기간이 지난 후에 영어능력 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ж о.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한 내 미제출 현황

연번 :		지	원자		제출마감일	제출마감일, 제출자료 및 제출일자			등록
긴긴	성명	국적	지원학과	학년도	원서접수 제출마감	어학시험명 (성적)	제출일자	여부	여부
1	R	-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TOEIC (810)	2018.1.8.	합격	등록
2	-	_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6.0)	2017.12.20.	합격	등록
3	-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7.0)	2017.12.18.	합격	무목
4	_	_	-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TOEIC (585)	2018.1.5.	합격	등록
5	-	_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6.5)	2018.1.29.	합격	목
6	_	_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5.0)	2017.12.21.	합격	등록
7	_	_	_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6.0)	2018.1.23.	합격	등록
8	-	_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TOEIC (845)	2018.2.6.	합격	등록
9	-	-	●과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5.0)	2018.1.29.	합격	등록
10	-	_	-	2018학년도 전기	2017.12.7.	IELTS (5.0)	2017.12.22.	합격	미등록
11	-	-	●과	2018학년도 후기	2018.6.18.	TOEFL iBT (98)	2018.6.26.	합격	등록
12	-	-	●과	2018학년도 후기	2018.6.18.	IELTS (5.5)	2018.7.9.	합격	등록
13	-	-	●과	2018학년도 후기	2018.6.18.	IELTS (6.5)	2018.7.23.	합격	등록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원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 「영재교육진흥법」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재	○ 경고(2명)
	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오공과	
	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	
	르면 응시자의 고사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전형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모집 분야별 인원의 80%는 일반전형, 20%	
	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며, 분야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20%미만인 경우 일반전형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원은 2018. 11. 14. ′2019학년도	
	초등기초과정 과학 전공 신입생(모집인원 : 일반전형	
	12명, 사회통합전형 3명)'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사회	
	통합전형 지원자가 5명(과학 전공 모집인원의 20% 이상)	
	임에도 응시자의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1명도 선발하지 않고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인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로 선발(공고 12명 → 선발 15명)	
	하는 등【붙임】"◐원 일반전형 신입생 초과 선발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및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20%	
	이상임에도 사회통합전형 미선발 모집 인원 총 5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원 일반전형 신입생 초과 선발 현황

연번	학년도	과정	전공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	선발인원	비고								
1	2010	~ P_1~	ات اس	일반전형(80%)	12	45	15	일반전형 3명 초과 선발								
2	2019	초등기초	과학	사회통합전형(20%)	3	5	0									
3	0001	عداء	5 C - 1 - 2	ラ ロコラ	ع د ما <i>ع</i>	크드리스	ラ ⊑ っ] ラ	ラ にっ] ラ	크드리크	ニ ピー)ニ	기원	일반전형(80%)	12	57	13	일반전형 1명 초과 선발
4	2021	초등기초	과학	사회통합전형(20%)	3	4	2									
5	2021	중등기초	수학	일반전형(80%)	12	29	13	일반전형 1명 초과 선발								
6	2021	36/12	一 千	사회통합전형(20%)	3	3	2									
	합계															

【붙임】

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소속	직급	성명	대학원/ 학부	교과목명	입력기한	입력일
1	2018	1	◇과	교수	S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2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3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4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5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6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7	2018	1	_	-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8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9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10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11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12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13	2018	1	_	_	_	대학원	_	2018.2.12.	미입력
14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15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16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17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18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19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20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21	2018	2	_	_	_	대학원	_	2018.08.13.	미입력
22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3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4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5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6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7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8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29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30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31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32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33	2019	1	_	_	_	대학원	_	2019.02.08.	미입력
34	2019	2	_	_	_	대학원	_	2019.08.11.	미입력
35	2019	2	_	_	_	대학원	_	2019.08.11.	미입력
36	2019	2	_	_	_	대학원	_	2019.08.11.	미입력
37	2019	2	_	_	_	대학원	_	2019.08.11.	미입력
38	2019	2	_	_	_	대학원	_	2019.08.11.	미입력
39	2019	2	_	_	_	대학원	_	2019.08.11.	미입력
40	2019	2	_	_	_	학부	_	2019.07.31.	미입력
41	2020	1	_	_	_	대학원	_	2020.01.30.	미입력
42	2020	1	_	_	_	대학원	_	2020.01.30.	미입력
43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44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45	2020	2	_	-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46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47	2020	2	-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48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연번	학년도	학기	소속	 직급	성명	대학원/ 학부	교과목명	입력기한	입력일
49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50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51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52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53	2020	2	_	_	_	학부		2020.08.05.	2020.08.06
54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55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56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_
57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58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59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60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6
61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62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7
63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64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65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66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7
67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7
68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7
69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7
70	2020	2	_			학부		2020.08.05.	
70	2020	2				학부		2020.08.05.	2020.08.10
72	2020	2				학부		2020.08.05.	2020.08.10
73	2020	2				학부		2020.08.05.	2020.08.10
74	2020	2				학부		2020.08.05.	2020.08.10
		2				학부			
75 70	2020		_	_	_		_	2020.08.05.	2020.08.10
76 77	2020	2	_		_	학부	_ _	2020.08.05.	2020.08.10
		2			_	학부		2020.08.05.	
78 79	2020	2				학부		2020.08.05. 2020.08.05.	2020.08.10 2020.08.10
80			_	_	_	학부	_		
81	2020	2		_	_	학부 최고	_	2020.08.05.	
82		2	_	_		학부	_	2020.08.05.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2020.08.05.	
83	2020		_	_	_	학부	_		+
84	2020	2	_	_	_	학부 최비	_	2020.08.05.	
85 ec	2020	2	_	_	_	학부 최고	_	2020.08.05.	
86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87	2020		_	_		학부	_	2020.08.05.	
88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89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90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91	2020	2	_	_		학부	_	2020.08.05.	
92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93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94	2020		_	_	_	학부	_	2020.08.05.	
95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96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97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98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99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100	2020	2	-	_	_	학부	_	2020.08.05.	2020.08.19

연번	학년도	학기	소속	직급	성명	대학원/ 학부	교과목명	입력기한	입력일
101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19
102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5
103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5
104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5
105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6
106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6
107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7
108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8
109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8.29
110	2020	2	_	_	_	학부	-	2020.08.05.	2020.09.01
111	2020	2	_	_	_	학부	-	2020.08.05.	2020.09.01
112	2020	2	_	_	_	학부	-	2020.08.05.	2020.09.01
113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9.01
114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9.01
115	2020	2	_	_	_	학부	_	2020.08.05.	2020.09.01
116	2021	1	_	_	_	학부	ı	2021.01.26.	2021.01.27
117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1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1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0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3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4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5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6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7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2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8
130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8
13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8
13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3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4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5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6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7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3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40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5
14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5
14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5
143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5
144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1
145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146	2021	1	-	_	_	학부	_	2021.01.26.	
147	2021	1	-	_	_	학부	_	2021.01.26.	
14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14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150	2021	1	-	_	_	학부	_	2021.01.26.	
15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15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연번	학년도	학기	소속	직급	성명	대학원/ 학부	교과목명	입력기한	입력일
153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18
154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55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23
156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23
157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5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24
15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23
160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23
16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8
16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8
163	2021	1	_	_	_	학부	-	2021.01.26.	2021.02.08
164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12
165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12
166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23
167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3.01
16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6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70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7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7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9
173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3
174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7
175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19
176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04
177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78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79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3.03
180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1.29
181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17
182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2021.02.17
183	2021	1	_	_	_	학부	_	2021.01.26.	미입력
184	2021	1	_	-	_	학부	_	2021.01.26.	미입력
					합계 7	7명 (중복지	· 제외)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교원(학교의 장과	ㅇ기관경고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ㅇ통보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학사	- 강의시간 배정 시
	운영 규정」제116조에는 교원의 강의시간은 주 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상 분산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주 3일 이상 배정
	- 금오공과대학교는 ■부 T에게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하기 바람
	배정하면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2일(월요일 4시간, 화요일	
	7시간)로 배정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	
	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전임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음.	

전임교원 주 3일 미만 수업 배정 현황

연	<u>u</u>	<u>1</u> 수			강의				
번	소속	직급	이름	학기	강의 시수	강의 요일	과목(시수)		
1	■ H		T	2020-	11	월	-		
1	■부	-	Т	2학기	2학기 11	화	-		
2				2020-	12	월	-		
2	-	-	-	2학기	12	수	-		
3				2021-	9	월	-		
3	-	-	-	1학기	9	화	-		
4	-	-		2021-	9	수	-		
4			-	1학기		목	-		
5		_	_	2021-	21- 9	월	-		
3	-	-	-	1학기	9	수	-		
6	_	_		2021-	11 5	화	-		
0	-	-	-	1학기	11.5	수	-		
7				2021-	12	수	-		
	-		-	1학기	12	목	-		
8			-	2021-	13	화	-		
0	-			1학기		수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정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09조에 따르면	` ′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 경고(1명)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교수가 휴・결강 및	ㅇ주의(8명)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처에 제출하여	' '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	-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급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초과 강사료는 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145,000원을 관련자 로부터 회수하여
	- 금오공과대학교 ▲과 U은 2018. 6. 14. 부서장 허가	
	없이 학기 중 공무외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외	조치하기 바람
	국외여행(2018. 6. 14.~6. 22.)으로 결강한 과목에 대해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1】"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U 등 교원 10명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공무외국외여행	
	등에 따른 결강 21과목 합계 75시간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특히, 위 U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미보강한 43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1,2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2】 "초과강사료 부적정 수령 현황" 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	
	까지 위 U 등 교원 10명은 미보강 74시간에 대한	
	초과강사료 합계 2,1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붙임1】

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

æ						결강 내역		기실시)	결가							
연 번	학과	직급	성명	학기	교과목명	일자	결강 교시	시간	결강 시수	비고						
					-	2018-6-14(목)	3	11:00~11:50	1	공무와구와 (*18.6.14~6.22)						
					-	2018-6-14(목)	1~2	09:00~10:50	2	공무우수행 (*18.6.14~6.22)						
					-	2018-6-14(목)	5	13:00~13:50	1	공무우) (*18.6.14~6.22)						
					-	2018-06-18(월)	1~2	09:00~10:50	2	공무수수행 (*18.6.14~6.22)						
					-	2018-06-18(월)	A~C	18:00~20:40	3	공무수수행 (*18.6.14~6.22)						
		교수		2018-1	-	2018-06-20(수)	3	11:00~11:50	1	공무가 하 (*18.6.14~6.22)						
	▲ 라			2018-1	-	2018-06-18(월)	3	11:00~11:50	1	공무와구의 (*18.6.14~6.22)						
			수 U				••				-	2018-06-21(목)	1~2	09:00~10:50	2	공무와구하 (*18.6.14~6.22)
1					-	2018-06-20(수)	1~2	09:00~10:50	2	공무우아행 (*18.6.14~6.22)						
					-	2018-06-21(목)	1	09:00~09:50	1	공무우아행 (*18.6.14~6.22)						
					-	2018-06-20(수)	5	13:00~13:50	1	공무와구하행 (*18.6.14~6.22)						
					-	2018-06-21(목)	5~6	13:00~14:50	2	공무우수행 (*18.6.14~6.22)						
					-	2018-12-17(월)	1~2	09:00~10:50	2	공무우아행 (*18.12.15~12.24)						
				2018-2	-	2018-12-20(목)	3	11:00~11:50	1	공무와구하행 (*18.12.15~12.24)						
					-	2018-12-17(월)	3	11:00~11:50	1	공무와구하행 (*18.12.15~12.24)						
					-	2018-12-20(목)	1~2	09:00~10:50	2	공무와구하 (*18.12.15~12.24)						

~1						결강 내약	후(보강대	기실시)	개기								
연 번	학과	직급	성명	학기	교과목명	일자	결강 교시	시간	결강 시수	비고							
					-	2018-12-17(월)	6	14:00~14:50	1	공무와구위 (*18.12.15~12.24)							
					-	2018-12-18(화)	1~2	09:00~10:50	2	공무와구와행 (*18.12.15~12.24)							
					-	2018-12-18(화)	A~C	18:00~20:40	3	공무구수행 (*18.12.15~12.24)							
					-	2018-12-18(화)	A	18:00~18:50	1	공무구수행 (*18.12.15~12.24)							
					-	2018-12-20(목)	6~7	14:00~15:50	2	공무우수행 (*18.12.15~12.24)							
				2019-	-	2019-07-15(월)	1~3	09:00~11:50	3	공무와구의 (*19.7.14~7.17)							
				여름	-	2019-07-16(화)	1~3	09:00~11:50	3	공무와구와 (*19.7.14~7.17)							
												-	2019-12-16(월)	1~2	09:00~10:50	2	공무구수하 (*19.12.13~12.16)
									2019-2	-	2019-12-16(월)	3	11:00~11:50	1	罗伊神 (*19.1213~1216)		
					-	2019-12-16(월)	5	13:00~13:50	1	공무와구하행 (*19.12.13~12.16)							
			•	U 소계	(9과목, 26강좌)			44								
2	-	-	-	2018-1	-	2018-05-09(수)	A~C	18:00~20:40	3	공무외국와여행 (*18.5.9~5.13)							
				H 소계	(1과목, 1강죄	 }			3								
				2010.2	-	2018-09-21(금)	2	10:00~10:50	1	공무외구우) (*18.9.21~9.24)							
3	-	-	-	2018-2	-	2018-09-21(금)	5~8	13:00~16:50	4	공무외구와하행 (*18.9.21~9.24)							
	- 소계 (2과목, 2강좌)						5										
4	4 2019-1		-	2019-06-21(금)	3~4	11:00~12:50	2	공무외국와(**) (*19.6.21~7.1)									
		1		Y 소계	(1과목, 1강좌	-)	ı		2								
5	-	-	-	2018-1	-	2018-05-28(월)	1~4	09:00~12:50	4	공무외국와(**) (**) (**) (**) (**) (**) (**) (**)							

						결강 내약	1(비가다	미심시)		
연 번	학과	직급	성명	학기	교과목명	일자	결강 교시	시간	결강 시수	비고
					-	2018-05-28(월)	7	15:00~15:50	1	공무와국와야행 ('18.5.24~5.29)
					-	2018-05-24(목)	1~2	09:00~10:50	2	공무와국와여행 (*18.5.24~5.29)
					-	2018-05-29(화)	1~2	09:00~10:50	2	공무외국와하행 (*18.5.24~5.29)
					-	2018-05-24(목)	4	12:00~12:50	1	공무외국와하행 (*18.5.24~5.29)
	- 소계 (3과목, 5강좌)									
6	-	-	-	-	-	2019-11-29(금)	5~7	13:00~15:50	3	연가 ('19.11.29)
,				- 소계	(1과목, 1강조	 			3	
7	-	-	-	2018-1	-	2018-05-24(목)	A~B	18:00~18:50	2	연가 (′18.5.24)
				- 소계	(1과목, 1강조	l-)			2	
8	-	-	-	2019-2	-	2019-11-04(월)	8~9	16:00~17:50	2	병가 (′19.11.4)
				- 소계	(1과목, 1강조	l-)			2	
9	-	-	-	2019-1	-	2019-05-01(수)	D	20:45~21:35	1	연가 (′19.5.1)
				- 소계	(1과목, 1강조				1	
10	10 2018-1 - 2018-06-11(월) A~C 18:00~20:40									공무국와 (*18.6.10~6.18)
				- 소계	(1과목, 1강조				3	
			<i>7</i> 5							

【붙임2】

초과강사료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원)

							71.11.77		초과강/ 실제수령	 사료 !내역	부적	정 수령액
연 번	학과	직급	성명	학년도	주당 책임 시간	주당 수업 시간	강사료 지급 단가 (a)	지 급 월	강사료 지급 대상 (b)	지급액 (a×b)	미보강 시간 (c)	지급액 (a×c)
				2010.1	0	4=	25,000	_	9	225,000	9	225,000
				2018-1	9	15	30,000	6	9	270,000	9	270,000
	▲ चो		T T	2010.2		15	25,000	10	9	225,000	9	225,000
1	▲ 과	_	U	2018-2	9	15	30,000	12	9	270,000	6	180,000
				2019-0름	-	45	40,000	7	45	1,800,000	6	240,000
				2019-2	9	12	30,000	12	9	270,000	4	120,000
			U 소	 :계					90	3,060,000	43	1,260,000
2	-	-	-	2018-1	6	13	25,000	5	28	700,000	3	75,000
			H 소	└──── :계					28	700,000	3	<i>7</i> 5,000
3	-	-	-	2018-2	9	12	30,000	9	12	360,000	5	150,000
			- 소	 계					12	360,000	5	150,000
4	-	-	-	2019-1	9	11	30,000	6	6	180,000	2	60,000
			Y 소	.계					6	180,000	2	60,000
5	-	-	-	2018-1	9	11	30,000	5	8	240,000	10	300,000
			- 소	 계					8	240,000	10	300,000
6	-	-	-	2019-2	7	10	25,000	11	12	300,000	3	75,000
			- 소	 계					12	300,000	3	75,000
7	-	-	-	2018-1	9	11	30,000	5	8	240,000	2	60,000
		1	- 소	 계	1	ı			8	240,000	2	60,000
8	-	-	-	2019-2	9	10	30,000	11	4	120,000	2	60,000
		I	 - 소	 계	I.				4	120,000	2	60,000
9	-	-	-	2019-1	9	11	30,000	5	8	240,000	1	30,000
		1	- 소	 계					8	240,000	1	30,000
10	-	-	-	2018-1	6	15	25,000	6	21	525,000	3	75,000
			- 소	 계					21	525,000	3	75,000
				합			•		74	2,145,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성적기준 미달자 근로장학생 추천	
	○ 「2018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한국	ㅇ주의(2명)
	장학재단, 2018. 3월)」및「국립대학 에너지지킴이 추진	
	계획(교육부 교육시설과-12500, '18. 10. 22.)」에 따르면 국립	
	대학 에너지지킴이 근로장학금은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G는 2018. 12월 에너지지킴이	
	근로장학생을 추천하면서 ◇과 학생 AQ(학번-)의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63.85(평점 0.97)인데도 에너지	
	지킴이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하여 장학금 640,000원이	
	지급되게 한 사실이 있음	
	※ ▶과 AR은 ◇과로부터 추천받은 위 AQ의 성적 요건을 미검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겸임교원 등)	
	○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규정(2017.12.13.개정)」	ㅇ기관경고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고,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으나 수업 운영상 부득이하여 학부(과)가	
	요청하는 경우 3시간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2019.7.9.개정)」	
	제52조에 따르면 강사 및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시간은 겸임	
	교원 등(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은 학기 당	
	매주 9시간, 강사는 학기 당 매주 6시간 시수 내에서	
	배정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3시간을 한도로 가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부 시간강사	
	AS에게 수업을 배정하면서 총장 승인 없이 주당	
	9시간을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 "겸임교원 등 주당	
	교수시간 초과 배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총장 허가 없이 위 AS 등	
	시간강사,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67명으로 하여금	
	주당 최대 교수시간보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5	
	시간까지 합계 297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붙임】

겸임교원 등 주당 교수시간 초과 배정 현황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2018- 1학기		3 6	9	6	3
1	▼부	시간 강사	AS	2018- 2학기		3	9	6	3
				2019- 1학기		3	9	6	3
					AS 소계				9
						3			
2	-	-	-	2021- 1학기		3	9	6	3
									3
					٠-/ ۱۱	3			3
3	_	_	_	2021-		3	9	6	3
				1학기		3			
	<u> </u>	<u> </u>	l	1	-소계	1	<u> </u>	1	3
						6			
				2018- 1학기		1.5	9	6	3
				14/1		1.5			
4				2018-		6	9	6	3
4	-	_	_	2학기		3	9	0	3
				2019-		6			
				2019- 1학기		1.5	9	6	3
				, .		1.5			
		I	I		- 소계				9
						2			
5	-	-	-	2018- 1학기		2	8	6	2
				1억기		2 2			
					 - 소계				2
					<u></u> <u></u> <u></u> <u></u> <u></u> <u></u> <u></u> <u></u>	3			
6	_	_	_	2019-		2	8	6	2
				1학기		3			-
	<u> </u>	I.	l	1			<u> </u>	1	2
						3			
				2019-		2			
7	-	_	-	1학기		2	9	6	3
						2			
					- 소계				3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2018- 2학기		3 2	7	6	1
				2971		2 3			
0				2020-		2	9	6	3
8	-	-	-	1학기		2 2			
				2020-		3 2	_		_
				2학기		2 2	9	6	3
				•	- 소계				7
						3			
				2020-		2			
9	-	-	-	2학기		2	9	6	3
						2			
		1			- 소계	l			3
						2			
				2018-		2			
10	-	-	-	1학기		2	8	6	2
						2			
					 - 소계				2
				2020	- 1/1	2			
11	-	-	-	2020- 2학기		2	4	3	1
		•		•	- 소계	•			1
						2			
				2018-		2	8	6	2
				1학기		2			_
12	-	-	_			2 2			
				2018-		2			
				2학기		2	8	6	2
						2			
			ı		- 소계			Г	4
				2018-		3			
				1학기		3	9	6	3
						3			
				2018-		3	9	6	3
13	_	_	_	2학기		3			
1.5	-	_	_			3			
				2010		3			
				2019- 1학기		1	9	6	3
				15/1		1			
						1			
					- 소계				9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2018- 1학기		3 3 1 1	8	6	2
14	-	-	-	2018- 2학기		3 3 3	9	6	3
				2019- 1학기		3 3 3	9	6	3
					- 소계				8
				2018- 1학기		3	9	6	3
				2018-		3 3 3			
15	-	-	-	2학기		1 1	8	6	2
				2019- 1학기		3 3 3	9	6	3
					 - 소계				8
				2020- 1학기		2 2 2	8	6	2
16	-	-	-	2020-		2 2 2			
				2학기		2 2	8	6	2
				ı	- 소계				4
17				2020-		2 2	8	6	2
1/	-	_	_	1학기		2 2	U	U	-
					- 소계				2
18	-	-	-	2020- 1학기		2 2 2	8	6	2
					- 소계	2			2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3	H "		, ,		
				2018-		3	8	6	2		
				1학기		1			_		
						1					
						3					
				2018-		3	8	6	2		
19	-	-	_	2학기		1					
						1					
						3					
				2019-		3					
				1학기		1	9	6	3		
						1					
						1					
			I	1	- 소계		I		7		
				2018-		3					
				1학기		3	9	6	3		
				, ,		3					
				2018-		3					
			2016-		3	9	6	3			
20			_			3					
20) - -		_	2010		3					
				2019- 1학기		3	9	6	3		
				1억기		3					
				3							
				2021-		3	9	6	3		
				1학기		3					
				1	- 소계	l			12		
						3					
						2018-		2			
				1학기		2	9	6	3		
						2					
						3					
				2019-		2	7	6	1		
				1학기		2	,		1		
						3					
21	-	-	-	2020-		2					
				2020- 1학기		2	9	6	3		
				1 1 7 1		2					
					3						
			2021-		2	11		_			
				1학기		2	11	6	5		
				* 7 / 1	2						
				<u> </u>	2 -1]	2			40		
					- 소계				12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2018- 1학기		3 3 1	7	6	1
22	-	-	-	2018- 2학기		3 3 1 1	8	6	2
				2019- 1학기		3 3 1 1	9	6	3
					, 그리	1			(
					- 소계	2			6
				2019- 1학기		2 2 2	8	6	2
23	-	-	-	2020- 1학기		2 2 2	8	6	2
						2			_
		I		I	- 소계				4
				2019- 1학기		3 3 2	8	6	2
24	-	-	-	2020- 1학기		3 3 2	8	6	2
				2020- 2학기		3 3 2	8	6	2
					- 소계				6
				2018- 1학기		3 2 2 2	9	6	3
25	-	-	-	2018- 2학기		3 3 1 1	8	6	2
				2019- 1학기		3 2 2 2	9	6	3
					- 소계				8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3			
				2018-		3	9	6	3
				1학기		3			
						3			
26	-	-	-			3			
				2018-		1	9	6	3
				2학기		1			
						1			
					L - 소계	_			6
						2			
27	_	_	_	2021-		2	7	6	1
	-			1학기		3	,		1
					2 →1]	3			1
					- 소계 				1
				2020-		2 2			
				2020- 1학기		2	8	6	2
28	-	_	_			2			
				2024		2			
				2021- 1학기		2	7	6	1
				1 1 1		3			
			T	T	- 소계		Γ	Г	3
						3			
				2018-		3	8	6	2
				1학기		1			_
						1			
29				• • • • • • • • • • • • • • • • • • • •		3			
29	-	_	_	2018- 2학기		3	9	6	3
				_ '''		3			
						3			
				2019- 1학기		3	9	6	3
				15/1		3			
					- 소계	1	1	•	8
						2			
			2018-		2				
30	-	-	-	1학기		2	8	6	2
						2			
		1		I	 임기홍 소계	I		l	2
					표기중 조계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 1:						2	HYU	1 1	, ,
				2020-		2	7	6	1
				2학기			/	0	1
31	-	_	_			3			
				2021		2			
				2021- 1학기		2	7	6	1
						3			
					-소계				2
				2010		3			
				2018- 1학기		3	7	6	1
						1			
						3			
				2018-		3	8	6	2
32	-	-	-	2학기		1			
						1			
						3			
				2019-		3	9	6	3
				1학기		1			
						1			
		1	I	-소계					
						2			
33	-	_	_	2020-		2	8	6	2
	_			2학기		2			
						2			
					-소계				2
						3			
				2018-		3	8	6	2
				1학기		1	0	0	<u> </u>
						1			
						3			
34	-	-	-	2018-		3	9	6	3
				2학기		3			
						3			
				2019-		3	9	6	3
				1학기) 		3
))	3			_
					-소계				8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0.143			
						3			
				2018-		0.143			
35	-	-	-	2학기		0.143	4	3	1
						0.143			
						0.143			
						0.143			
					-소계				1
				2010		3			
36	-	-	-	2018- 2학기 -		2	7	6	1
						2			
					-소계				1
						3			
				2020- 2학기		3	9	6	3
37				3					
3/	-	-	-			3			
				2021- 1학기		3	9	6	3
				, ,		3			
					-소계				6
				2021-		3			
38	-	-	-	1학기 -		3	9	6	3
) _i)	3			
					-소계				3
				2018-		2 2			
39	-	-	-	2016- 1학기		2	8	6	2
						2			
					-소계				2
						3			
				2020- 1학기		3	9	6	3
40	_	_	_			3			
10				2021		3			
				2021- 1학기		3	9	6	3
						3			
					-소계				6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41	-	-	-	2018- 2학기		0.25 3 0.25 0.25 0.25	4	3	1
					-소계				1
42	_	_	_	2020- 1학기		3 3 3	9	6	3
12	_			2021- 1학기		3 3 3	9	6	3
					-소계				6
43	-	-	-	2021- 1학기		3 3 3	9	6	3
					-소계				3
44	-	-	-	2021- 1학기		3 3 3	9	6	3
									3
45	-	-	-	2019- 1학기		3 3 3	9	6	3
		1			-소계				3
				2020- 1학기		3 3 3	12	9	3
46	-	-	-	2020- 2학기		3 3 3 3	12	9	3
) 3			
					-소계				6
47	-	-	-	2021- 1학기		3	9	6	3
					-소계	3			3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48	-	-	-	2018- 2학기		3 1 1 1 1	7	6	1															
				2021- 1학기		3 3 3	9	6	3															
					-소계				4															
10				2018- 2학기		3 2 2	7	6	1															
49	-	-	-	2020- 2학기		3 2 2	7	6	1															
									2															
				2018- 1학기		3 3 3	9	6	3															
50	-			2019- 1학기		3 3 3	9	6	3															
30								_	_								-	-	-		2020- 2학기		3 3 3	9
				2021- 1학기		3 3 3	9	6	3															
				I	-소계			I	12															
51	_	_	_	2018- 2학기		3 3 3	9	6	3															
				2020- 2학기		3 3 3	9	6	3															
					-소계				6															
52	_	_	_	2018- 2학기		3 2 2	7	6	1															
				2020- 2학기		3 2 2	7	6	1															
			·	1	-소계				2															
53	-	-	-	2021- 1학기		4	8	6	2															
		•		•	-소계		•		2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2018- 2학기		3 3	9	6	3
54	-	-	-	2020- 2학기		3 2 3	8	6	2
				2021- 1학기		3 3 3	9	6	3
					-소계				8
55	-	-	-	2020- 2학기		3	9	6	3
						3			
					-소계				3
56	-	-	-	2020- 2학기		3 3 3	9	6	3
	1	<u> </u>	<u>I</u>	l	 -소계		<u> </u>	1	3
57	-	-	-	2020- 1학기		3 2 2	7	6	1
			<u> </u>		-소계				1
						3			
58	-	-	-	2020- 1학기		3	9	6	3
									3
					- 2 274	3			3
5 0				2021-					
59	-	-	-	1학기		3	9	6	3
					- 소계				3
						3			
60	-	-	-	2021- 1학기		3	9	6	3
						3			
	·				G 소계				3
				2025		3			
61	-	-	-	2021- 1학기		3	9	6	3
						3			
					- 소계				3
				2020		3			
62	-	-	-	2020- 1학기		3	9	6	3
	<u> </u>	I			- 소계	l			3

연 번	소속	직급	성명	학기	담당과목	시수	시수 합계	최대 시수	초과 시수
63				2020- 1학기		3 3 3	9	6	3
03		-	2021- 1학기		3 3 3	9	6	3	
					- 소계		1		6
						3			
64	-	_	_	2021-		3	9	6	3
				1학기		3			
					- 소계				3
						3			
65	-	-	-	2018- 2학기		3	9	6	3
				29/1		3			
				1	-소계				3
				2020		3			
				2020- 1학기		3	9	6	3
66		_	_	17/		3			
				2021-		3			
				1학기		3	9	6	3
)n	3			
					- 소계				6
				2021-		3			,
67	-		1학기		3	9	6	3	
					 - 소계				3
					<u> </u>				297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1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 「평생교육법」제30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 경고(4명)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	
	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대학부설	
	□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	
	습정책과-1972, '14. 3. 26.) 및 대학 부설 □원 운영 철저(평	
	생학습정책과-422, '17. 1. 18.)」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	
	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	
	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원은 2018. 3월 2018학년도 1학기	
	과목을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총 29개	
	과정을 신규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

연번	학기	강좌명	강사명	정원(명)	교육 (기간/요 [.]	*
1	2018-1	-	V	20	2018.03.05.~06.16.	목 19:00~22:00
2	2018-1	-	_	20	2018.03.05.~06.16.	수 10:00~13:00
3	2018-1	<u>-</u>	-	15	2018.03.05.~06.16.	목 19:00~22:00
4	2018-1	-	-	20	2018.03.05.~06.16.	월 19:00~21:00
5	2018-1	_	-	20	2018.03.05.~06.16.	화 10:00~12:00
6	2018-1	-	-	15	2018.03.05.~06.16.	월 19:00~21:00
7	2018-1	-	_	20	2018.03.05.~06.16.	금 10:00~13:00
8	2018-2	-	-	20	2018.09.03.~12.15.	수 18:00~21:00
9	2018-2	-	-	20	2018.09.03.~12.15.	목 10:00~12:00
10	2018-2	-	-	20	2018.09.03.~12.15.	금 19:00~21:00
11	2018-2	-	-	20	2018.09.03.~12.15.	목 19:00~21:00
12	2018-2	-	-	20	2018.09.03.~12.15.	화 10:00~12:00
13	2019-1	-	-	20	2019.03.04.~06.15.	수 19:00~21:00
14	2019-1	-	-	20	2019.03.04.~06.15.	화 10:00~12:00
15	2019-1	-	_	20	2019.03.04.~06.15.	수 19:30~21:30
16	2019-1	-	-	20	2019.03.04.~06.15.	수 10:00~12:00
17	2019-2	-	-	20	2019.09.02.~12.14.	화 10:00~12:00
18	2019-2	-	-	20	2019.09.02.~12.14.	화 19:00~22:00
19	2019-2	-	W	20	2019.09.02.~12.14.	목 19:00~21:00
20	2019-2	-	-	20	2019.09.02.~12.14.	금 10:00~12:00
21	2019-2	-	-	20	2019.09.02.~12.14.	수 19:00~22:00
22	2020-2	-	-	20	2020.08.31.~12.12.	월 19:00~21:00
23	2020-2	-	_	20	2020.08.31.~12.12.	화 19:00~22:00
24	2020-2		-	20	2020.08.31.~12.12.	목 10:00~12:00
25	2020-2	-	-	20	2020.08.31.~12.12.	월 19:00~21:00
26	2020-2	-	-	20	2020.08.31.~12.12.	화 10:00~12:00
27	2020-2	-	-	20	2020.08.31.~12.12.	금 13:00~15:00
28	2020-2	-	-	20	2020.08.31.~12.12.	수 10:00~13:00
29	2021-1	-	-	20	2021.03.02.~06.14.	화 19:00~22: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2	출석미달자 학점부여 부적정	
	○ 「금오공과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제25조에	ㅇ경고(1명)
	따르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오공과	ㅇ통보
	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금오	
	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4항에 따르면	학점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람
	정당한 절차 없이 과목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미만	웃게 시니아가 마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W은 2018학년도 1학기 과목	
	총 45시간 중 30시간(4분의 3미만)만 출석한 학생 X	
	(학번 -)의 성적을 'B+'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3	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미준수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65조 제2항, 제175조	ㅇ경고(2명)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적확정 이후 성적의 기재	ㅇ주의(3명)
	착오 및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교수가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적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며, 상대평가는 강의분반 단위별로	
	A등급 이상은 3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Y은 2019. 1. 9. 2018학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강 학생 Z(학번 -)의 성적을 성적 입력오류로	
	B에서 A로 정정 신청하여 위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이 31%가 되게 하는 등 【붙임】"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초과 현황"과 같이 2018년 2	
	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Y 등 교수 2명이	
	위 Z 등 수강학생 2명의 성적을 정정 신청하여 해당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이 초과되게 한 사실이	
	있고,	
	- &처는 위 성적 정정에 따른 A등급 이상 비율이	
	적게는 31%에서 많게는 35%로 변경되는 데도 성적	
	분포 비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음	

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초과 현황

연 번	학기 :	담당교원			수강현황		대상학생		성적정정내용					급 비율 내용
		소속	직급	성명	교과목	평가 학생수	학번	성명	신청일	정정전	정정후	사유	정정전	정성후
1	2018- 2학기	◀부	-	Y	-	48	-	Z	2019. 1.9.	В	A	성적 입력 오류	A이상 14명 (29%)	A이상 15명 (31%)
2	2019- 2학기	-	-	-	-	20	-	-	2020. 1.7.	B+	A+	성적 산출 오류	A이상 6명 (30%)	A이상 7명 (35%)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번 24	지 적 사 항 각종인쇄물 계약 업무 부적정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 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018~2020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관주의 통보 연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등 일반 경쟁을 통해 구매
	- 금오공과대학교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표: AA)와 2018회계 연도에 70건(합계163,682,800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붙임】 '동일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회계 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 ㈜○○와 수의계약 하여 총224건 (합계 495,676,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동일업체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동일업체	(업체명	병 : ㅇㅇ, 대.	丑:A.	A) 수의계의	후 현황		
회계 연도		인쇄물	사무용품		현수막 및 배너제작		총액		비고
	건수	지출액	건수	지출액	건수	지출액	건수	지출액	
2018 (대학회계)	70	163,682,800	10	16,884,900	8	1,592,800	88	182,160,500	
2 019 (대학회계)	85	169,040,900	4	6,655,000	5	400,400	94	176,096,300	
2019 (발전기금)	1	10,624,000					1	10,624,000	
2020 (대학회계)	68	152,328,500	7	8,035,500	7	352,600	82	160,716,600	
합 계	224	495,676,200	21	31,575,400	20	2,345,800	265	529,597,4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에 따르면 제5조의2(부총장),	ㅇ주의(3명)
	제6조(단과대학 등), 제7조(부속시설 등),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따라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	- 향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	수행하는 교수에게
	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기 바람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수보직경비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대학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국립학교 설치령」상 직위가 아닌	
	◀단 부단장 H에게 교수보직경비 2,300천원을 지급	
	하는 등【붙임】"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18. 1.부터 '19. 2.까지 위 ◀단 부단장 H 등	
	교수 2명에게 교수보직경비 합계 7,1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직위	7) - 7 - 7 - 7			교수보격	직경비 지급내역		
2 U	411	지급근거	소속	직급	성명	기간	단가	지급액
						'18.1~'19.1. (12개월)	150	1,800
1	◀단 부단장	◀단 보직수당 지급 계획	♡과	_	Н	'19.2. (1개월)	500	500
						소계		2,300
			_		AM	'18.1~'19.1. (12개월)	400	4,800
2	◀단 기획홍보부 부장					'19.2. (1개월)	50	50
						소계		4,850
	합 계							

외국어 시험 수당 등 소관사무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급건명(수당명)	소속	직급	성명	지급일자	수령액	비고
1		◆ 부	부교수	AB	2018.3.16	100	일반재원
2	2018-1학기 대학원 외국어	-	-	-	2018.3.16	100	일반재원
3	시험 수당	-	-	_	2018.3.16	70	일반재원
4		-	-	-	2018.3.16	50	일반재원
5	2018년 삿반기 일반직 공무워	-	-	-	2018.04.02	40	일반재원
6	2018년 상반기 일반직 공무원 승진 평가 위원 수당 지급	-	-	-	2018.04.02	40	일반재원
7		-	-	-	2018.10.01	100	일반재원
8	_ - - - - - - - - - - - - - - - - - - -	-	-	-	2018.10.01	100	일반재원
9	2018-2학기 대학원 외국어 시험 수당 지급	-	-	-	2018.10.01	70	일반재원
10		-	-	-	2018.10.01	70	일반재원
11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2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3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4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5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6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7	2018-2학기 대학원별 졸업 종합시험 감독수당 지급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8		-	-	-	2018.10.26	40	일반재원
19		-	-	-	2018.10.26	40	일반재원
20		-	-	-	2018.10.26	40	일반재원
21		-	-	-	2018.10.26	40	일반재원
22		-	-	-	2018.10.26	40	일반재원
	합계			18명		1,220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부적정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53조에 따르면 학위논문 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1. 1. 18.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 없이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21.1.15.)" 공문(원장 결재)에 따라【붙임】 "대학원위원회 미심의(원장결재)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현황"과 같이 ♡과 AC 등 교직원 총 116명에게 2020 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합계 12,630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급단가: 박사학위(위원장 100,000원, 위원 50,000원), 석사학위 (위원장 40,000원, 위원 30,000원)	o 통보 - 향후 학위논문 삼/로는 내부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급 하기 바람

【붙임】 <u>대학원위원회 미심의(원장결재)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현황</u>

(단위 : 천원)

2 3 4 - </th <th>비고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th>	비고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2 3 4 - </td <td>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td>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20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5 6 7 8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심사위원 수당 - - - - - - - - 23 - 24 - 25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6 7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0 - - - 20 - - - 30 - - 201 - - 2021.01.18 - - 30 - 30 - 30 - 30 - 40 - 40 - 40 - 80 - 60 -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7 8 9 - - - 10 - - - 11 - - - 12 13 - - - 13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 19 - - - - 20 - - - - 200 - - - - 240 - - - - 2021.01.18 - - - 30 - - 40 - 23 - - - 24 - - - 25 - - -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8 9 10 10 11 12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 2 25 2 25 2 25 2 25 2 25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9 10 10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 25 25 25 25 25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0 11 1 2 240 수 1 240 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0 20 20 20 20 2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2 13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3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4 15 16 17 18 19 20 21 200 21 22 23 24 25 - - -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5 16 16 - - 17 - - 18 - - 19 - - 20 - - 21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입대체경비
16 17 18 19 20 21 20 20 2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 30 <td></td>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td></td>	
18 19 20 21 22 23 24 25 - - - <td< td=""><td>입대체경비</td></td<>	입대체경비
19 20 21 21 22 학위논문심사위원 수당 - </td <td>입대체경비</td>	입대체경비
20 21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심사위원 수당	입대체경비
21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 - - - 100 수약 22 학위논문심사위원 수당 - - - 40 수약 23 - - - 80 수약 25 - - - 60 수약	입대체경비
22 학위논문심자위원 수당 - - - - 40 수 23 - - - 80 수 24 - - - 60 수	입대체경비
23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입대체경비
24 80 4 ⁻⁶ 25 60 4 ⁻⁶	입대체경비
25 60 4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40 수·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60 수·	입대체경비
30 수·	입대체경비
30 수·	입대체경비
32 210 수·	입대체경비
33 30 수·	입대체경비
30 수·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170 수 ^c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42 300 ¢°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입대체경비

연번	지급건명(수당명)	소속	직급	성명	지급일자	수령액	비고
43	11 2 3 (1 3 3)	-	-	-	,,,,	430	수입대체경비
44		-	_	-		30	수입대체경비
45		-	_	-		70	수입대체경비
46		-	_	-		60	수입대체경비
47		-	-	-		30	수입대체경비
48		-	_	-		100	수입대체경비
49		-	-	-		100	수입대체경비
50		_	_	-		250	수입대체경비
51		-	-	-		100	수입대체경비
52		_	_	-		50	수입대체경비
53		-	-	-		30	수입대체경비
54		_	_	-		160	수입대체경비
55		-	-	-		120	수입대체경비
56		-	-	-		100	수입대체경비
57		-	_	-		180	수입대체경비
58		-	-	-		120	수입대체경비
59		-	-	-		150	수입대체경비
60		-	_	-		200	수입대체경비
61		_	-	-		100	수입대체경비
62		_	_	-		160	수입대체경비
63		-	-	-		100	수입대체경비
64		_	_	-		30	수입대체경비
65		_	-	-		30	수입대체경비
66		-	_	-		40	수입대체경비
67		-	_	-		40	수입대체경비
68		_	_	_		100	수입대체경비
69		_	_	-		40	수입대체경비
70		_	_	-		390	수입대체경비
71		_	_	-		170	수입대체경비
72		-	_	_		30	수입대체경비
73		-	_	-		60	수입대체경비
74		_	-	-		300	수입대체경비
75		-	_	-		140	수입대체경비
76		_	_	-		120	수입대체경비
77		_	_	_		30	수입대체경비
78		_	_	-		330	수입대체경비
79		_	_	-		30	수입대체경비
80		-	_	-		280	수입대체경비
81		-	-	_		30	수입대체경비
82		-	-	-		330	수입대체경비
83		-	-	-		30	수입대체경비
84		-	-	-		30	수입대체경비
85		-	_	-		50	수입대체경비
86		-	_	-		60	수입대체경비
87		-	_			70	수입대체경비
			_	-			
88		-	-	-		60	수입대체경비

연번	지급건명(수당명)	소속	직급	성명	지급일자	수령액	비고
89		-	-	-		80	수입대체경비
90		-	-	-		30	수입대체경비
91		-	-	-		40	수입대체경비
92		-	-	-		40	수입대체경비
93		-	-	-		60	수입대체경비
94		-	-	-		210	수입대체경비
95		-	-	-		180	수입대체경비
96		-	-	-		60	수입대체경비
97		-	-	-		60	수입대체경비
98		-	-	-		60	수입대체경비
99		-	-	-		60	수입대체경비
100		-	-	-		100	수입대체경비
101		-	-	-		210	수입대체경비
102		-	-	-		30	수입대체경비
103		-	-	-		210	수입대체경비
104		-	-	-		30	수입대체경비
105		-	-	-		40	수입대체경비
106		-	-	-		70	수입대체경비
107		-	-	-		70	수입대체경비
108		-	-	-		60	수입대체경비
109		-	-	-		160	수입대체경비
110		-	-	-		100	수입대체경비
111		-	_	-		50	수입대체경비
112		-	-	-		140	수입대체경비
113		-	-	-		30	수입대체경비
114		-	-	-		50	수입대체경비
115		-	-	-		330	수입대체경비
116		-	-	-		220	수입대체경비
	합계		116명		12,63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연번 28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 제5항 및「공무원 인재 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 하는 경우 일비의 지급은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을 지급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 및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 기관주의 ○ 시정(회수) - 과다 지급한 여비 합계 260,000원을 AD 등 10명으로 부터 화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라
	일비의 5할을 지급하고, 식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3. 19. □원 소속 AD에게 2018. 3. 12.부터 3. 16.일까지 교육(비합숙) 목적의 출장비로 교육훈련 여비 30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붙임】"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D 등 직원 10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기준과 다르게 합계 260천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천원)

			7	지급대상지	-		교육훈련	출장 내용		여비	(일비/-	식비)	
연 번	지급 부서	지급 일	소속	직위 (급)	성명	출장지	출장 기간	출장 목적	교육 훈련 기간	실제 지급 액	정상 지급 액	과다 지급 액	비고
1	□원	'18. 3.19.	□원	-	AD	-	'18. 3.12.~ 3.16.	교육	-	100	70	30	비합숙
2	-	′18. 4.18.	-	-	-	-	'18. 4.02.~ 4.4.	-	-	60	50	10	비합숙
3	-	′19. 4.4.	-	-	-	-	'19. 3.10.~ 3.12.	-	-	120	80	40	비합숙 (교육 일정: '19. 03.11.~ 03.12.)
4	-	′19. 4.4.	-	-	-	-	′19. 3.10.~ 3.12.	-	-	120	80	40	"
5	-	′19. 4.4.	-	-	-	-	′19. 3.10.~ 3.12.	-	-	120	80	40	n
6	-	'19. 4.16.	-	-	-	-	′19. 4.10.~ 4.12.	1	-	60	40	20	합숙
7	-	′20. 7.3.	-	-	-	-	′20. 6.10.~ 6.12.	-	-	60	40	20	합숙
8	-	′20. 7.20.	-	-	-	-	′20. 6.10.~ 6.12.	-	-	60	40	20	합숙
9	-	′20. 7.20.	-	-	-	-	′20. 6.10.~ 6.12.	-	-	60	40	20	합숙
10	-	′20. 7.20.	-	-	-	-	′20. 6.10.~ 6.12.	-	-	60	40	20	합숙
					합계					820	560	26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연번 29	지 적 사 항 포상금 집행 부적정 ○ 「2018~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 기관경고 ○ 통보 - 예산 집행 시 「국립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의 '세출 예산 성질별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하기 바람

<u>포상금 집행 부적정 현황</u>

(단위: 천원)

연 번	건명	지급일자	지급부서	수령인	지급액
1	개교기념식 감사패 및 공로패 구매	2018-05-29	☆과	4명	565
2	-	2018-05-29	-	-	4,100
3	-	2018-05-31	-	-	3,000
4	-	2019-05-28	-	-	5,600
5	-	2019-12-12	-	-	2,000
6	-	2019-12-13	-	-	7,400
7	-	2019-12-13	-	-	5,000
8	-	2020-02-07	-	-	400
9	-	2020-02-27	-	-	1,400
10	-	2020-05-04	-	-	2,400
11	-	2020-05-21	-	-	16,000
12	-	2020-05-21	-	-	9,800
13	-	2020-05-25	-	-	2,400
14	-	2020-06-10	-	-	600
15	-	2020-06-15	-	-	2,480
16	-	2020-06-30	-	-	1,200
17	-	2020-08-14	-	-	900
18	-	2020-08-25	-	-	500
19	-	2020-10-30	-	-	2,000

연 번	건명	지급일자	지급부서	수령인	지급액
20	-	2020-12-22	-	-	5,000
21	-	2020-12-23	-	-	1,000
22	-	2020-12-30	-	-	220
23	-	2020-12-30	-	-	1,000
24	-	2021-01-04	-	-	2,900
25	-	2021-01-12	-	-	11,900
26	-	2021-01-14	-	-	600
27	-	2021-01-27	-	-	10,600
28	-	2021-02-01	-	-	3,400
29	-	2021-02-17	-	-	450
30	-	2021-02-24	-	-	500
31	-	2021-02-25	-	-	1,400
	계				106,71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ㅇ주의(2명)
	및「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	○통보
	대학교)」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7,143천원을 관련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규정에 맞게 정산 하기 바람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9. 3. 13.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1,620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6.까지 위 "제16대 교수회 정기	
	총회" 등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T							
연번	건명	법인카드 사용부서	법인카드 사용점	결제일	결제 금액	지출일	지출 담당자	비고
1	제16대 교수회 정기총회 경비(식대)	-	-	2019-03-13	1,620	2019-04-08	-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 미기재
2	2019학년도 1학기 최고경영자과정 제30기 3월 셋째주 간식비	-	-	2019-03-19	500	2019-04-10	-	"
3	2019학년도 1학기 최고경영자과정 제30기 4월 둘째주 간식비	-	-	2019-04-09	500	2019-05-07	-	"
4	최고경영자과정 수학여행 1일차 중식	-	-	2019-06-20	600	2019-07-09	-	"
5	최고경영자과정 수학여행 1일차 만찬	-	-	2019-06-20	1,200	2019-07-09	-	"
6	최고경영자과정 수학여행 2일차 만찬	-	-	2019-06-21	1,200	2019-07-09	-	"
7	제25대 총동창회 산악회 동계 등반대회 식비지원	-	-	2020-01-10	1,000	2020-02-06	-	"
8	현장업무 담당자 격려 오찬	-	-	2020-06-24	523	2020-07-21	-	"
		계			7,143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주의(23명)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ㅇ통보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 대학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되어 있고, 「2017~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	있도록 자금 관리
	지침(교육부)」에 따르면 총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방안을 마련·시행 하기 바람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따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5. 26. □□에 가입한 학교	
	자금 정기예금(기간 : '17. 5. 26. ~ 18. 5. 26., 383,154천원,	
	1.61%)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25일이 지난 2018. 6. 22.	
	해약(만기후 이자율 0.81%)함으로써 211 천원의 이자손실을	
	발생시키는 등【붙임】"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21. 1.까지	
	위 학교자금 정기예금 등 33개 정기예금을 만료일	
	보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49일까지 지연 해약하여	
	총 8,932천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가입일	만기일	이자율 (%)	해약일	지연 일수	만기후 이자율 (%)	이자 손실액
1		-	383,154	2017-05-26	2018-05-26	1.61	2018-06-22	25	0.81	211
2	-	-	250,000	2017-12-12	2018-12-12	2.04	2018-12-20	8	0.81	62
3	-	-	300,000	2017-12-12	2018-12-12	2.04	2018-12-20	8	0.81	75
4	-	-	106,406	2018-03-13	2019-03-13	1.35	2019-03-18	5	0.75	9
5	-	-	2,000,000	2018-11-06	2019-02-06	1.20	2019-02-15	8	0.63	252
6	-	-	250,528	2018-12-05	2019-12-05	1.60	2019-12-20	15	0.5	112
7	-	-	46,286	2018-12-05	2019-12-05	1.60	2019-12-20	15	0.5	21
8	-	-	37,897	2018-12-05	2019-12-05	1.60	2019-12-20	15	0.5	17
9	-	-	550,000	2018-12-20	2019-12-20	1.94	2019-12-30	10	0.60	148
10	-	-	300,000	2018-12-20	2019-12-20	1.94	2019-12-30	10	0.60	81
11	-	-	300,000	2018-12-20	2019-12-20	1.94	2019-12-30	10	0.60	81
12	-	-	1,000,000	2018-12-20	2019-12-20	1.90	2019-12-30	10	0.80	301
13	-	-	1,000,000	2019-01-25	2020-01-25	1.85	2020-02-05	11	0.87	155
14	-	-	200,000	2019-01-25	2020-01-25	1.83	2020-02-05	11	0.94	24
15	-	-	2,650,000	2019-02-19	2020-02-19	1.87	2020-06-26	128	0.32	3,502
16	-	-	107,853	2019-03-18	2020-03-18	1.60	2020-08-14	149	0.5	593
17	-	-	200,000	2019-04-18	2020-04-18	1.82	2020-06-26	69	0.38	122
18		-	500,000	2019-04-18	2020-04-18	2.05	2020-06-26	69	0.79	194
19	-	-	100,000	2019-04-18	2020-04-18	1.85	2020-06-26	69	0.37	63
20	-	-	100,000	2019-04-18	2020-04-18	1.85	2020-06-26	69	0.37	63
21		-	500,000	2019-09-30	2020-09-30	1.67	2021-01-15	107	0.55	584
22	-	-	400,000	2019-11-04	2020-11-04	1.53	2021-01-15	72	0.25	465
23	-	-	38,511	2019-12-20	2020-12-20	1.10	2021-02-19	60	0.23	55
24	-	-	47,037	2019-12-20	2020-12-20	1.10	2021-02-19	60	0.23	68
25	-	-	254,589	2019-12-20	2020-12-20	1.10	2021-02-19	60	0.23	366
26	-	-	600,000	2019-12-30	2020-12-30	1.58	2021-01-15	16	0.40	116
27	-	-	600,000	2019-12-30	2020-12-30	1.58	2021-01-15	16	0.40	116
28	-	-	1,000,000	2019-12-30	2020-12-30	1.60	2021-01-15	16	0.22	230
29	-	-	1,000,000	2020-01-28	2020-02-28	0.90	2020-03-10	11	0.40	151
30	-	-	1,000,000	2020-01-28	2020-02-28	0.90	2020-03-11	12	0.40	164
31	-	-	1,000,000	2020-06-11	2020-08-11	0.50	2020-09-10	30	0.13	308
32	-	-	50,000	2020-07-23	2020-10-23	0.34	2021-01-15	84	0.15	46
33	-	-	1,000,000	2020-11-10	2021-01-10	0.30	2021-02-17	37	0.13	177
				합계						8,932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2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ㅇ경징계(2명)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ㅇ시정(회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 연구비를 부당하게
	아니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	지원받은 AE 등 2명으로부터 합
	11.3.)」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2명으로부터 합 계 14,000천원을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출처를 밝히는	아기 마임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	
	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되어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지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등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연구책임자는 지급 받은 연구비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교수 AE(AF의 지도교수)는	
	2018. 5. 1. 연구과제로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2017. 12. 발표된 제자 AF(지도교수 AE)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석사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요약(석사학위 논문	
	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7page로 정리)	
	하여 2020. 11. 교외 학술지에 게재(제1저자 AF, 교신	
	저자 AE)한 뒤에 2021. 1. 14.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등 【붙임】"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위 AE 등 교수 2명은 총 2건, 합계 14,000천원의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에 대해서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하여 교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

			연구	구기간 연구비			연구결과물	석사학위 논문						
연번	연도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시작 일	종료 일	지원액 (천원)	지원 회계	제출기 한	결과물(논문명)	제출일	논문명	대학원생	인준일
1	2018	★과	AE		2018- 05-01	2019- 04-30	7,000	산단 회계	2021- 04-30	-	2021- 01-14	-	AF	2017-12
2	2018	-	-	_	2018- 05-01	2019- 04-30	7,000	산단 회계	2021- 04-30	-	2020- 11-20	-	-	2019-06
합계 (2명)			총 2건			14,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연구노트 관리 소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ㅇ 기관경고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통보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 미제출된 연구노트를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받아 보관·관리 하기 바람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	
	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규정」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노트 제출서와 함께 △단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I은 2015. 8. 1.부터 2016. 7. 31.	
	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단에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노트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6. 5.	
	부터 2021. 2.까지 위 I 등 교원 및 연구원 145명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616건에 대한 연구노트를	
	△단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연구노트 미제출 현황

연번	연구과세명	부서명	작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1	-	☆부	-	I	<i>\$</i> \$\$	2015-08-01	
2	-	-	-	-	-	2015-10-01	2016-09-30
3 4	-	-	-	-	<u>-</u>	2015-06-01	2016-05-31 2016-08-31
5	-	-	-	-	<u>-</u> -	2015-03-01	2016-09-30
6	<u>.</u>	_	_	_	-	2016-11-01	2017-10-31
7	-	-	_	-	-	2016-12-07	2017-12-06
8	-	-	-	-	-	2016-03-01	2017-02-28
9	F	-	-	-	-	2016-06-01	2017-04-30
10	-	-	-	-	-	2016-07-01	2016-12-31
11	-	-	-	-	-	2016-03-01	2016-12-31
12	-	_	_	-	-	2016-07-01	2017-06-30
13	-	-	_	-	-	2016-02-01	2017-01-31
14	-	-	-	-	-	2016-04-01	2017-03-31
15	-	-	-	-	-	2016-06-01	2017-05-31
16	-	-	-	-	-	2016-06-01	2017-05-31
17 18	-	-	-	-		2016-05-01 2016-06-01	2016-12-31 2017-05-31
19	-	-	-	-	<u>-</u>	2016-05-01	2017-04-30
20	-	-	_	-	-	2016-06-01	2017-05-31
21	-	-	_	_	-	2016-06-01	2017-05-31
22	-	-	_	-	-	2016-06-01	2017-05-31
23	-	_	_	_	_	2016-06-01	2017-05-31
24	-					2016-06-01	2017-05-31
25	-	-	-	-	<u>-</u> -	2016-06-01	2016-12-31
26	-	-		-		2016-06-01	2017-05-31
27	-	-	_	-	-	2016-07-01	2016-12-31
28	-	-	-	-	-	2016-07-01	2016-12-31
29	-	_	_	_	-	2016-07-01	2016-12-31
30	-					2016-10-01	2017-09-30
	-	-	-	-	-		
31	-	-	-	-	-	2016-08-01	2017-07-31
32	F	-	-	-	-	2016-09-01	2017-08-31
33	<u>-</u>	_	_	_	-	2016-09-01	2017-08-31
34	-	_	_	_	_	2016-12-01	2017-11-30
35	-	-	-	-	-	2016-11-01	2017-10-31
36	-	-	-	-	-	2016-06-20	2017-06-19
37 38	-	-	-	-		2016-06-27 2016-06-20	2017-06-26 2017-06-19
39	-	-	-	-	<u>-</u> -	2016-06-27	2017-06-26
40	- -	_	_	_		2016-08-01	2016-11-30
41	-	-	-	-	-	2016-08-01	2017-07-30
42	-	-	-	-	-	2016-09-01	2017-08-31
43	-	-	-	-		2016-11-01	2017-10-31
44	-	-	-	-	-		2017-09-30
45	-	-	-	-		2016-10-01 2016-12-01	2017-09-30
46 47	-	-	-	-	<u>-</u> -	2016-12-01	
48	-	-	_	-	-	2016-04-01	
49		-	-	-	-	2016-08-10	
50	-	_	-	-	_	2016-01-01	2016-12-31
51	-	-	-	-	-	2016-05-01	2017-04-30
52	-	_	_	_	-	2016-05-01	2017-04-30
53	-	_	_	_		2016-05-01	2017-04-30
54	-	-	-	-	<u> </u>	2016-07-01	
55	-	_	_	_	-	2016-06-01	2017-05-31
56	-	-	-	-	-	2016-06-01	2017-05-31
57	-	-	-	-	-	2016-06-01	2017-05-31
<u>58</u>	-	-	_	-		2016-06-01	2017-05-31
59	-	-	-	-	-	2016-06-01	2017-05-31
60	-	-	-	-		2016-05-01	2017-04-30 2017-04-30
61 62	<u>-</u>	-	-	-		2016-05-01 2016-11-01	2017-10-31
UZ	<u>-</u>					4010-11 - 01	<u> </u>

Color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작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66 .							2016-11-01	2017-10-31
Color		-	-	-	-	-		
Color					-			2017-10-31
Color								
Color								
Color								
Table	70	-	-	-	-	-		
The second color of the		-	-	-	-	-		
	72	-	-	-	-	=	2016-11-01	2017-10-31
Total	73	-	_	-	-	-	2016-11-01	2017-10-31
Total	74	-	-	-	-	-	2016-11-01	2017-10-31
77	75	-	-	-	-			
Section Sect								
S								
S	80							
82 - - - - 206000 207232 81 - - - - - 207000 207243 207240 207243 207240 207243								2017-10-15
Section Sect		-	-	-	-	-	2016-01-01	
88 .				-	-			
86 - - - - 2071-10 2081-03 88 - - - - - 2071-04 2071-23 89 - - - - - 2070-04 2071-23 90 - - - - - 2070-04 2071-23 91 - - - - - 2070-04 2071-23 92 - - - - 2070-04 2071-23 93 - - - - 2070-04 2071-23 94 - - - - 2070-04 2071-23 95 - - - - 2070-04 2071-23 97 - - - - 2070-04 2071-23 99 - - - - 2070-04 2071-23 101 - - - - 2070-04 2071-23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ST								2017-12-31 2018-11 20
Section Sect								
Section								
99			-		-			
99								
19								
94								
94								
96 - - - - 207-60 207-23 97 - - - - 207-00 207-23 98 - - - - 207-00 207-23 100 - - - - 207-00 207-23 101 - - - - 207-00 207-23 102 - - - - 207-00 207-23 102 - - - - 207-00 208-03 103 - - - - 207-00 208-03 103 - - - - 207-00 208-03 104 - - - - 207-00 208-03 105 - - - - 207-00 208-03 105 - - - 207-00 208-03 106 - - -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	-		-			
Section Sect		-	-	-	-	-		
Section Sect	96	-	-	-	-	-	2017-06-01	2017-12-31
Section Sect	97	-	_	_	-	-	2017-01-01	2017-12-31
Section Sect	00						2017.01.01	2017 12 21
100		-	-	_	-	-		
101								
102								
108								
104								
105			-		-			
106								
107								
108								
110		-						
111	109	-	-	-	-	-	2017-08-01	
112								2018-09-30
113								
114								
115								
116								
117		_	_					
118								
119								
120								
121								
123	121							
124 - - - - - 2017-08-01 2018-02-28 125 - - - - - - 2017-08-01 2018-02-28 126 - - - - - - 2017-08-01 2018-02-28 127 - - - - - 2017-08-01 2018-02-28 128 - - - - - - 2017-08-01 2018-02-28 129 - - - - - - 2017-08-01 2018-02-28 130 -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 2017-08-01 2018-02-28		-	-	_		-		
125								
126 - - - - - 2017-08-01 2018-02-28 127 - - - - - - 2017-08-01 2018-02-28 128 - - - - - - 2017-08-01 2018-02-28 129 - - - - - - 2017-08-01 2018-02-28 130 -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 2017-08-01 2018-02-28								
127 - - - - - 2017-08-01 2018-02-28 128 - - - - - - 2017-08-01 2018-02-28 129 - - - - - - 2017-08-01 2018-02-28 130 -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2017-08-01 2018-02-28								
128 - - - - - 2017/08/01 2018/02/28 129 - - - - - - 2017/08/01 2018/02/28 130 -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2017/08/01 2018/02/28								
129 - - - - - 2017/08/01 2018/02/28 130 -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2017/08/01 2018/02/28								2018-02-28
130 - - - - - 2017-08-01 2018-02-28 131 - - - - - - 2017-08-01 2018-02-28								
131 2017-08-01 2018-02-28								
	132	-	-	-	-	<u>-</u>	2017-08-01	2018-02-28

18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150		-	-	-	-	-		2017-12-31
130		-	-	-	-			2018-02-28
157								
Section				-				
194								2017-07-19
10		-	-	_	-			2018-02-28
Section		-	-	-	-	-		2018-02-28
Section Sect	141	-	-	-	_	_	2017-06-01	2018-02-28
Head	142	-	-	-	-	-		2018-02-28
15								2018-02-28
1-								
147								2018-02-28
190		-		_				2018-02-28
Signature		-	-	-	-	-		2018-04-30
S			-	-	-			2018-06-30
SE								
Signature								
Section								2018-02-28
150								2018-10-31
157	155	-	-	-	-	_		2018-10-31
Section			-	-	-			2018-08-31
150								
16								
16								2018-08-31
166								2018-10-31
164	162	-	-	_	-	-		2018-10-31
166	163	-	-	-	-	-	2017-11-01	2018-10-31
166	164	-	-	-	-	-	2017-11-01	2018-08-31
167	165	-	-	-	-	-	2017-11-01	2018-10-31
168	166		-	_	-	-	2017-04-01	2017-12-31
168	167	-	_	_	_	-	2017-06-30	2017-12-31
169								
170								2018-04-07
172		-	_	-	-	-		2017-12-31
173		-	-	-	-	-		2018-10-15
174				-	-			2017-12-31
175								
176								2017-12-31
177		-						2017-12-31
179		-		-		-		
180		-	-	-	-	-		
181								
182								
183								
184								2019-12-31
186	184	-					2018-10-01	2018-12-31
187			_	-	<u> </u>			2018-12-31
188								2018-12-31
189		<u>-</u>	-	-	-			2018-12-31
190	188	<u>-</u>					2018-01-01	2018-12-31
191		-	-	-	-	-		2018-12-31
192 -	190	-	-	-			2018-01-01	2018-12-31
198	191	-	-	-	-	-	2018-01-01	2018-12-31
194	192	-	-	-	-	-	2018-04-01	2019-01-31
195	193	-	_	_	-	-	2018-04-01	2019-01-31
195	194		-					2019-01-31
197 - - - - - 2018-07-01 2018-07-01 2018-12-12-12-12-12-12-12-12-12-12-12-12-12-		-					2018-05-01	2019-04-30
198 - - - - - 2018/06/01 2019/03 199 - - - - - - 2018/05/01 2018/12 200 - - - - - - 2018/05/01 2019/09	196	-	-	-		-	2018-05-01	2019-04-30
199 - - - - - 2018-05-01 2018-12 200 - - - - - 2018-09-20 2019-09	197	_	_	_	-	-	2018-07-01	2018-12-31
199 - - - - - 2018-05-01 2018-12 200 - - - - - 2018-09-20 2019-09	100		_	_		_	20180501	JUIOUS 31
200 2018/09-20 2019/09								
								2019-09-19
201 - - 2018-12-17 2019-12	201							

100 100	연번	१ न्यमाप्त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i>지원기관</i>	시작일	종료일
1	202	-	-	-	-	-	2018-04-30	2018-12-31
1.00	203	-	-	-	-	-	2018-01-01	2018-12-31
The color of the				+				2019-05-31
20				+				
28				+				
1				_				2019-02-28
1				_				2019-02-28
1.00		-	-	-	-	-		2019-02-28
23				_				
1966		-	-	-	-	-		
1.00	213	-	-	-	-	-	2018-03-01	2019-02-28
1960 1960	214	-	-	-	-	-		2019-02-28
1997		-	-	-	-	-		
1988				1				
1								
1909								
Page		-	-	-	-			2018-12-31
22	221	-	-	-	-	-	2018-03-01	2019-02-28
24		· ·	-	-	-			2019-02-28
25 - - - 208 (80) (2090) 2090 (2000)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Decomposition Decompositio								
27								
29		-	-		-			2019-02-28
20		-						2019-02-28
1	229	-	_	_	-	-	2018-03-01	2019-02-28
The second color of the	230	-	_	-	_	_	2018-03-01	2019-02-28
23	231	-	-	_	-	-		2019-02-28
Color		-	-	-	-	-		2019-02-28
25	233	-	-	-	-	-	2018-03-01	2019-02-28
1960 19903	234	-	-	-	-	-	2018-03-01	2019-02-28
27	235	-	_	-	_	-	2018-04-01	2019-02-28
28	236	-	-	_	-	-		2019-02-28
1998		-	-	-	-	-		2019-01-31
20								
All								
22								
23								2019-02-28
25		-	-	-	-	-		2019-02-28
1.5		-	-	-	-	-		2019-02-28
27		-	-	-	-		2010 00 01	2017 02 20
28								
29								
The state of the								2019-06-30
Color								
Color								
23		-	-	-	-	-		
254	252	<u> </u>					2018-09-01	2019-06-30
25		-	_	-	-			2019-06-30
The second color of the				-				2019-08-31
277			-	-	-	-		
258 - - - - - 2018/0612 259 - - - - - 2018/1049 2019/1042 260 - - - - - 2018/01-01 2018/10-1	256	-	-	-	-	-	2018-01-01	2019-02-28
258 - - - - - 2018/0612 259 - - - - - 2018/1049 2019/1042 260 - - - - - 2018/01-01 2018/10-1	257	<u> </u>			_		2018-01-01	2018-12-31
260 - - - - - 201801-01 2018123 261 - - - - - - 201801-15 201902-15 262 - - - - - - 201801-01 201812-3 263 - - - - - - 201801-01 201812-3 264 - - - - - - 201801-01 201812-3 265 - - - - - - 201811-01 20204-3 266 - - - - - - 201906-11 20204-3 267 - - - - - 201906-24 20206-2 268 - - - - - - 201906-24 20206-2 269 - - - - - - 201906-24 20206-2	258	-	-	-	-	-		2019-06-17
261 - - - - - 2018/01-5 2019/02-1 262 - - - - - - 2018/01-0 2018/12-3 263 - - - - - - 2018/01-0 2018/12-3 264 - - - - - - 2018/01-0 2018/12-3 265 - - - - - - 2019/01-0 2018/12-3 266 - - - - - - 2019/06-0 2019/06-3 267 - - - - - - 2019/06-2 2020/06-2 268 - - - - - - 2019/06-2 2020/06-2 269 - - - - - - 2019/06-2 2020/06-2								2019-10-18
22 - - - - - 2018-01-01 2018-12-3 233 - - - - - - 2018-01-01 2018-12-3 244 - - - - - - - 2018-01-01 2018-12-3 245 - - - - - - 2018-01-01 2019-01-2 246 - - - - - - 2019-06-01 2020-05-3 247 - - - - - - 2019-06-24 2020-06-2 248 - - - - - - - 2019-06-24 2020-06-2 249 - - - - - - - 2019-06-24 2020-06-2								
263 - - - - - - 2018-01-01 2018-12-3 264 - - - - - - - 2018-01-01 2018-12-31 265 - - - - - - 2018-11-01 2020-04-31 266 - - - - - 2019-06-01 2020-05-31 267 - - - - - 2019-06-24 2020-06-22 268 - - - - - 2019-06-24 2020-06-22 269 - - - - - - 2019-06-24 2020-06-22								
24 - - - - - 2018/01-01 2018/12-33 25 - - - - - - 2018/11-01 2020/04/3 26 - - - - - 2019/06-01 2020/05/3 267 - - - - - 2019/06-24 2020/05/2 278 - - - - - 2019/06-24 2020/06/2 269 - - - - - 2019/06-26 2020/06/2								
25 - - - - 2018-11-01 2020-043 26 - - - - - 2019-06-01 2020-05-3 267 - - - - - 2019-06-24 2020-06-2 288 - - - - - 2019-06-24 2020-06-2 269 - - - - - 2019-06-26 2020-06-2								
26 - - - - - 20190601 2020063 267 - - - - - - 20190624 2020062 288 - - - - - - 20190624 2020062 269 - - - - - - 20190626 2020062								
267 - - - - - 2019-06-24 2020-06-22 268 - - - - - - 2019-06-24 2020-06-22 269 - - - - - - 2019-06-24 2020-06-22 279 - - - - - - 2019-06-24 2020-06-22								
28 - - - - - 201906-24 202008-2 299 - - - - - - 201906-26 202006-2								
269 2019-06-26 2020-06-26								2020-03-23
								2020-06-25
, , , , , , , , , , , , , , , , , , , ,	270	-	_	_	_	-		2019-06-30

320 - - - - - 201901-01 20191231 321 - - - - - - 20201-01 2020430 322 - - - - - - 201906-01 2020331 323 - - - - - 20204-01 2020930 324 - - - - - 20204-01 20209331 325 - - - - - 20204-01 2020930 326 -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201907-01 20201031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271	-	-	-	-	-	2016-04-20	2016-11-04
73 1 1 1 1 2	272	-	-	_	-	-	2017-04-01	2017-10-31
	273	-	-	-	-	-	2019-12-17	2020-12-16
	274	-	-	-	-	-	2018-04-01	2018-10-31
	275	-	-	-	-	-	2019-01-01	2019-12-31
The color of the	276	-	-	_	-	-	2020-01-01	2020-12-31
The color of the	277	-	_	_	_	_	2019-10-01	2020-09-30
		_	_	_	_	_		
20		_						
Section Sect		-	-	-	-	-		
20	280	-	-	-	-	-		2020-11-05
Color	281	-	-	-	-	-	2019-12-02	2020-12-01
Section Sect	282	-	-	-	-	-	2019-11-25	2020-11-24
55 - - - - 200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83	-	-	-	-	-	2019-11-25	2020-11-24
28 - - - - 209.00<								
ST								
28 -								
Section Sect		-	-		-			
Page	289	-	-	_	_	-	2019-02-01	2019-05-31
22 .	290	-	-	-	-	-		
Section Sect	291	-	-	_	-	-	2020-01-01	2020-07-31
Part	292	-	-	-	-	-	2019-01-01	2019-12-31
25 - - - - 200101 2019-231 26 - - - - 200101 2019-231 27 - - - - - 2019-01 2019-231 28 - - - - - 2019-01 2019-231 30 - - - - - 2019-01 2019-231 31 - - - - - - 2019-01 2019-231 32 - - - - - - 2019-01 2019-231 33 - - - - - - 2019-01 2019-231 34 - - - - - - 2019-01 2019-231 35 - - - - - - - - - - - - - - - - <t< td=""><td>293</td><td>-</td><td>-</td><td>-</td><td>-</td><td>1</td><td></td><td>2020-12-31</td></t<>	293	-	-	-	-	1		2020-12-31
26		-	-	_	-	-		
27								
288								
299 - - - - - 1 201-000 201-000 201-023 301 - - - - - - 201-000 201-023 302 - - - - - - - 201-000 2019-023 303 -								
Section Sect								
302	300	-	-	-	-	-	2019-01-01	2019-12-31
38	301	-	-	-	-	-	2020-01-01	2020-03-31
304	302	-	-	-	-	-	2019-01-01	2019-12-31
35	303	-	-	-	-	-	2019-01-01	2019-12-31
306	304	-	-	_	-	-	2020-01-01	2020-12-31
37								
10								
309								
310								
312							2019-01-01	2020-05-31
313		-	-		-	-		
314								
315								
316								
317								
319								
320 - - - - - 201901-01 2019-12-31 321 - - - - - - 20201-01 2020-04-30 322 - - - - - - 2019-05-01 2020-03-31 323 - - - - - 2019-05-01 2020-03-31 324 - - - - - 2019-05-01 2020-03-31 325 - - - - - 2020-04-01 2020-03-31 326 -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 2019-07-01 2020-10-31	318	-	-	_	-	-	2019-01-01	2019-12-31
321 - - - - - 2020-01-01 2020-04-01 322 - - - - - - 2019-06-01 2020-08-31 323 - - - - - - 2020-04-01 2020-09-30 324 - - - - - 2020-04-01 2020-09-30 325 - - - - - 2020-04-01 2020-09-30 326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2019-07-01 2020-10-31	319	-	-	-	-	-	2019-01-01	2019-11-30
322 - - - - 2019/06/01 2020/03/03 323 - - - - 2020/04/01 2020/03/03 324 - - - - 2019/06/01 2020/03/03 325 - - - - - 2020/04/01 2020/03/03 326 - - - - - 2019/06/01 2019/09/01 327 - - - - - 2019/07/01 2020/10/31	320	-	-			-	2019-01-01	2019-12-31
323 - - - - - 200401 200930 324 - - - - - - 20190601 200931 325 - - - - - - - 2009401 200930 326 -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20190701 20201031	321	-	-	_	_	-	2020-01-01	2020-04-30
324 - - - - - 2019/06/01 2020/03/31 325 - - - - - - 2020/04/01 2020/09/30 326 -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2019/07/01 2020/10/31		-	-	_	-			
325 - - - - - 2020401 2020930 326 -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20190701 20201031								
326 - - - - - 2019/06-01 2019/09-30 327 - - - - - - 2019/07-01 2020-10-31								2020/03-31 2020/03-20
327 2019(07-01) 2020-10-31								
	328	-	-	-	-	_		2019-12-31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329	-	-	-	-	-	2020-01-01	2020-12-31
330	-	-	-	-	-	2019-01-01	2019-12-31
331	-	-	-	-	-	2019-01-01	2020-03-31
332	<u>-</u>	-	-	-	-	2019-02-01	2019-05-31
333 334	<u>-</u>	-	-		-	2019-02-01	2019-05-31 2019-05-31
335	-	-		-	<u>-</u>	2019-03-01	2020-02-29
336	<u>-</u>	_	_	-	<u>-</u>	2020-03-01	2021-02-28
337	-	-	_	-	-	2019-03-01	2020-02-29
338	-	-	-	-	-	2020-03-01	2021-02-28
339	<u>-</u>	-	-	-	-	2019-03-01	2020-02-29
340	-	-	-	-	-	2020-03-01	2020-05-31
341	-	-	-	-	-	2019-03-01	2020-02-29
342 343		-	-	-		2019-03-01	2020-02-29
344	-		<u> </u>	- 1	<u> </u>	2020-03-01	2020-05-31
345	-	_	_		-	2019-03-01	2020-02-29
346	-	-	_	-	-	2020-03-01	2021-02-28
347	-	-	_	-	-	2019-03-01	2020-02-29
348	-	-	-	-	-	2020-03-01	2021-02-28
349	-	-	-	-		2019-03-01	2020-02-29
350	-	-	-	-		2020-03-01	2020-05-31
351 352	-	-	-	-		2019-03-01 2020-03-01	2020-02-29
353	-	-	-	-		2019-03-01	2020-02-29
354	-		<u> </u>	-	-	2020+03-01	2021-02-28
355		_	-	-		2019-03-01	2020-02-29
356	-	-	-	-	-	2020-03-01	2021-02-28
357	-	-	_	_	-	2019-03-01	2020-02-29
358	<u>-</u>	-	-	-	-	2020-03-01	2020-05-31
359	-	-	-	-	-	2019-03-01	2020-02-29
360	-	-	-	-		2020-03-01	2021-02-28
361 362	-	-	-	-		2019-03-01 2020-03-01	2020-02-29 2021-02-28
363	-	-	-	-	<u>-</u>	2020-03-01	2021-02-28
364	<u>-</u>			-	-	2019-03-01	2020-02-29
365	-	_	_	-	-	2020-03-01	2021-02-28
366	-	-	-	-	-	2019-03-01	2019-05-31
367	<u>-</u>	-	-	-	-	2019-03-01	2020-02-29
368	-	-	-	-	-	2020-03-01	2021-02-28
369	<u>-</u>	-	-	-		2019-03-01	2020-02-29
370 371	-	-	-	-	_	2020-03-01 2019-03-01	2021-02-28 2020-02-29
372	<u>-</u>	-	-	-	<u> </u>	2020+03-01	2020-05-31
373		_	_	-	<u>-</u>	2019-03-01	2020-02-29
374	-	-	-	-	-	2020-03-01	2021-02-28
375	-	-	-	-	-	2019-03-01	2020-02-29
376	-	-	-	-	_	2020-03-01	
377	-	-	-	-	-		2020-02-29
378	-	-	-	-		2019-03-01	
379 380	<u>-</u>	-	-	-	<u> </u>	2019-03-01 2020-03-01	2020-02-29 2021-02-28
381	<u> </u>	-	-	-		2019-03-01	2020-02-29
382	-	_	-	-	-	2020-03-01	2020-08-31
383	-	-	-	-	_	2019-03-01	2020-02-29
384	-	-	-	-	-	2020-03-01	2021-02-28
385	<u> </u>	-	-	-	-	2019-03-01	2020-02-29
386	-	-	-	-		2020-03-01	2021-02-28
387	<u>-</u>	-	-	-	-	2019-03-01	2020-02-29
388	-	-	-	-	-	2020-03-01	2021-02-28
389	-	-	-	-	-	2019-03-01	2019-07-31
390	<u></u>	-	-	-	-	2019-03-01	2020-02-29
391	-	-	-	-	-	2020-03-01	2021-02-28
392 393		-	-	-	-	2019-03-01 2019-03-01	2020-02-29 2020-02-29
393 394	<u> </u>	-	-	-	<u>-</u>	2019-03-01	2020-02-29
395	-	-	-	-	-	2019-03-01	2020-02-29
396	-	-	-	-	-	2019-03-01	2020-02-29
397	<u>-</u>	-	-	-		2020-03-01	2021-02-28
398 399	-	-	-	-		2019-03-01 2019-03-01	2020-02-29 2020-02-29
400	<u>-</u>	-	_	-		2019-03-01	2020+02-29
401		-	-	-	-	2020-03-01	

ohul	서그리하다	Hilm	717	~17=11^1=1	-101-1-1	17701	Z701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402	-	-	-	-	-	2019-03-01	2020-02-29
403	-	-	-	-	-	2020-03-01	2021-02-28
404	-	-	-	-	-	2019-03-01	2020-02-29 2021-02-28
406	-	-	-	-		2019-03-01	2020-02-29
407	-	-	-	-	<u>-</u>	2019-03-01	2020-02-29
408	-	_		-		2019-03-01	2020-02-29
409	<u>-</u>	_	_	-	-	2020-03-01	2020-05-31
410	÷	_	_	_	_	2019-03-01	2020-02-29
411	-	-	_	-	=	2020-03-01	2021-02-28
412	-	-	-	-	=	2020-03-01	2021-02-28
413	-	-	-	-	-	2019-03-01	2020-02-29
414	-	-	-	-	-	2020-03-01	2020-05-31
415	<u>-</u>	_	_	_	_	2019-03-01	2020-02-29
416	_	_		_	_	2020-03-01	2021-02-28
417		_		_		2020-03-01	2020-05-31
418	- -	_	_	-	_	2019-03-01	2020-02-29
419	÷	_	_	_	-	2020-03-01	2021-02-28
420	-	_	_	-	-	2019-03-01	2020-02-29
421	-	-	_	-	-	2020-03-01	2021-02-28
422	-	-	-	-	-	2019-03-01	2020-02-29
423	-	-	-	-	-	2020-03-01	2021-02-28
424	-	-	-	-	-	2019-03-01	2020-02-29
425	-	-	-	-	-	2020-03-01	2021-02-28
426	-	-	-	-	-	2019-03-01	2019-08-31
427	-	-	-	-	-	2019-03-01	2020-02-29
428	-	-	-	-	_	2020-03-01	2021-02-28
429	-	-	-	-	_	2019-03-01	2020-02-29
430	<u>-</u>	-	-	-	-		
431	-	-	-	-	-	2019-04-01	2020-01-31
432	-	-	-	-	-	2020-02-01	2020-10-31
433	-	-	-	-	-	2019-05-01	2020-06-30
434	-	-	-	-	-	2019-06-01	2020-02-29
435	-	-	-	-	-	2019-06-01	2020-02-29
436	-	-	-	-	=	2020-03-01	2021-02-28
437	-	-	-	-	-	2019-06-01	2020-02-29
438	-	-	-	-	-	2020-03-01	2021-02-28
439	-	-	-	-	-	2019-06-01	2020-02-29
440 441	-	-	-	-	-	2020-03-01 2019-06-01	2021-02-28
	-	-	-	-	-		
442	-	-	-	-	_	2019-06-01	2020-02-29
443	-	-	-	-	-	2020-03-01	2021-02-28
444	-	-	_	-	-	2019-06-01	2020-02-29
445	-	-	-	-	-	2020-03-01	2021-02-28
446	-	-	-	-	-	2019-06-01	2020-02-29
447	<u>-</u>	-	-	-	_	2020-03-01	2021-02-28
448	-	-	-	-	-	2019-06-01	2020-02-29
449	-	-	-	-	_	2020-03-01	2021-02-28
450	<u>-</u>	-	-	-	-	2019-06-01	2020-02-29
451	<u>-</u>	-	-	-	_	2020-03-01	2021-02-28
452	-	-	-	-	-	2019-06-01	2020-02-29
453 454	-	-	-	-	-	2020-03-01 2019-06-01	2021-02-28 2020-02-29
454	<u>-</u>	-	-	-	<u>-</u> -	2020-03-01	2021-02-28
456	<u>-</u>	-	-	-	<u> </u>	2019-06-01	2020-02-29
457	-	-	-	-		2020-03-01	2021-02-28
458	- -	_		-		2019-06-01	2020-02-29
459	-	_	_	-	-	2020-03-01	2021-02-28
460	-	-	_	-	-	2019-06-01	2020-02-29
461	-	-	_	_	_	2020-03-01	2021-02-28
462	<u>-</u>	_	-	_		2019-06-01	2020-02-29
463	<u> </u>	-		-	-	2020-03-01	2021-02-28
464	- -	_		-		2019-06-01	2020-05-31
465	-	_	_	_	_	2019-07-01	2019-10-31
466						2019-07-01	2019-10-31
467	<u>-</u>	-	-	-		2019-07-01	2019-10-31
468	<u> </u>	_		_	<u>-</u>	2019-07-01	2019-10-31
100	·					1 401/0/101	4017-10-01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i>지원</i> 기관	시작일	종료일
469	-	-	-	-	-	2019-07-01	2019-10-31
47 0	-	-	-	-	-	2019-07-01	2019-10-31
471	-	-	-	-	-	2019-07-01	2019-10-31
472	-	-	-	-	-	2019-09-09	2020-09-08
473	-	-	-	-	-	2019-07-01 2019-09-01	2020+06-30 2020+02-29
474 475	<u>-</u>	-	-	-	-	2020+03-01	2021-02-28
476	-	-	-	-	-	2019-09-01	2020-08-31
477	-	-	-	-	-	2019-09-01	2020-02-29
478	-	-	-	-	-	2020-03-01	2021-02-28
479	<u>-</u>	-	-	-	-	2019-09-01	2020-08-31
480	-	-	-	-	-	2019-09-01	2020-08-31
481	-	-	-	-	-	2019-09-01	2020-08-31
482	-	-	-	-	-	2019-09-01	2020-08-31
483	-	-	-	-	-	2019-09-01	2019-12-31
484	-	-	-	-	-	2020-01-01	2020-12-31
485	<u> </u>	-	-	-	-	2019-09-01	2020-08-31
486 487	<u>-</u>	-	-	-	-	2019-09-01	2020-02-29 2020-12-31
488	-	-	-	-		2019-07-01	2019-12-31
489	-	-	-	-	-	2019-04-15	2019-12-31
490	-	-	-	-	-	2020-01-01	2020-12-31
491	-	-	-	-	-	2019-04-19	2019-12-31
492 493	<u>-</u>	-	-	-	-	2020-01-01 2019-04-19	2020-12-31 2019-12-31
493	<u>-</u>	-	-	-	<u>-</u>	2020-01-01	2020-12-31
495	-	_		-	-	2019-05-15	2020-06-14
496	-	-	-	-	-	2019-01-01	2019-12-31
497	-	-	-	-	-	2020-01-01	2020-12-31
498	-	-	-	-		2019-06-01	2019-11-30
499	<u>-</u>	-	-	-	-	2019-04-15	2019-11-30
500	-	-	-	-	-	2019-01-01	2019-12-31
501	-	-	-	-	-	2019-01-01	2019-12-31
502	-	-	-	-	-	2019-02-15	2019-11-14
503	-	-	-	-	-	2019-01-01	2019-12-31
504	-	-	-	-	-	2019-01-01	2019-12-31
505	-	-	-	-	-	2020-01-01	2020-12-31
506	-	-	_	-	-	2020-01-01	2020-12-31
507	-	_	_	_	_	2019-05-13	2019-11-30
508	-	-	_	-	-	2019-01-01	2019-12-31
509	-	-	_	-	-	2020-01-01	2020-12-31
510	-	_	_	_	_	2019-03-01	2019-11-30
511	-	-		-	<u>-</u>	2020-03-01	
512	-	-	-	-	-	2019-10-19	2020-10-18
513	-	-	-	-	_	2019-12-01	2020-11-30
514	-	-	-	-		2019-10-01	
515 516	<u>-</u>	-		-	-	2019-12-04 2019-12-01	2020-12-03 2020-02-28
517	-	-	-	-		2019-09-01	2020-05-31
518	-	-	_	-	-	2019-04-01	2019-11-30
519	-	-	_	-	-	2019-11-22	2020-11-21
520	-	-	-	-	-	2019-11-22	2020-11-21
521 522	-	-	-	-		2020-01-01 2020-01-01	2020-12-31 2020-12-31
523	<u>-</u>	-	-	-	<u>-</u>	2020-03-01	2021-02-28
524		_	_	_	-	2020-03-01	2021-02-28
525	-	-	-	-	-	2020-03-01	2021-02-28
526	-	-	-	-	-	2020-03-01	2021-02-28
527 500	-	-	-	-		2020-03-01 2020-03-01	2021-02-28 2021-02-28
528 529	<u>-</u>	-	-	-	<u>-</u>	2020-03-01	2021-02-28
530		-	_	_	-	2020-04-01	2020-10-31
531	-	_	_	_	-	2020-03-01	2020-10-31

연번	연구과제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532	-	-	-	-	-	2020-04-13	2020-12-31
533	-	-	-	-	-	2020-04-13	2020-12-31
534	-	-	-	-	-	2020-04-13	2020-12-31
535 536	<u>-</u>	-	-	-	<u>-</u>	2020-04-13 2020-04-01	2020-12-31 2020-12-31
537	-	-	-	-	-	2020-06-01	2021-02-28
538	-	-	-	-	-	2020-06-01	2021-02-28
539 540	<u>-</u>	-	-	-	<u>-</u>	2020-06-01	2021-02-28 2021-02-28
541	- -	-	-	-	<u>-</u>	2020-06-01	2021-02-28
542	-	-	-	-	-	2020-06-01 2020-06-01	2021-02-28 2021-02-28
543 544	-	-	-	-	-	2020-06-01	2021-02-28
545	-	-	-	-	-	2020-04-01	2020-12-31
546	-	-	-	-	-	2020-04-01	2020-12-31
547	-	-	-	-	-	2020-04-01	2020-12-31
548 549	<u>-</u>	-	-	-	-	2020-04-01 2020-04-01	2020-12-31 2020-12-31
550	-	-	-	-	-	2020-06-01	2021-02-28
551 552	- -	-	-	-	<u>-</u>	2020-06-01 2020-06-01	2021-02-28 2021-02-28
553	<u> </u>	-		-		2020-06-01	2021-02-28
554	<u> </u>					2020-06-01	2021-02-28
555	-	-	-	-	<u>-</u>	2020-06-01	2021-02-28
556	-	-	-	-	-	2020-06-01	2021-02-28
557	-	-	-	-	-	2020-06-01	2021-02-28
558 559	-	-	-	-	<u>-</u>	2020-06-01 2020-06-15	2021-02-28 2020-12-20
560	-	-	-	-	-	2020-04-01	2020-12-31
561	-	-	-	-	-	2020-06-01	2021-02-28
562 563	<u>-</u>	-	-	-	<u>-</u>	2020-06-01 2020-06-01	2021-02-28 2021-02-28
564	- -	-	-	-		2020-04-01	2020-12-31
565	-	-	-	-	-	2020-05-01	2021-01-31
566	-	-	-	-	-	2020-07-01	2020-12-31
567	-	-	-	-	-	2020-07-01	2020-12-31
568	-	-	-	-	-	2020-07-01	2020-08-28
569	-	-	-	-	-	2020-05-01	2020-12-31
570	-	-	-	-	-	2020-06-12	2021-03-11
571	-	-	-	-	-	2020-06-22	2021-03-21
572	-	-	-	-		2020-06-22	2020-12-21
573	-	-	-	-	-	2020-06-22	
574 575	-	-	-	-		2020-04-01 2020-06-22	2021-03-31 2020-12-21
	-	-	-	-	-		
576	-	-	-	-	-	2020-06-22	2020-12-21
577	-	-	-	-		2020-06-22	2021-01-21
578 579	<u>-</u>	-	-	-	-	2020-06-22	2021-01-21
580	-	_	-	-	<u>-</u>	2020-06-22	2021-02-21
581	<u>-</u>	-	-	-	-	2020-06-22	2021-02-21
582	<u> </u>	_	_	-	<u>-</u> -	2020-06-22	2021-03-21
583						2020-06-22	2021-02-21
584	-	-	-	-	-	2020-06-22	2021-02-21
	-	-	-	-	-		
585	<u>-</u>	-	-	-	-	2020-06-22	2021-03-21
586	-	-	-	-	-	2020-06-22	2021-03-21
587	-	-	-	-	-	2020-06-22	2021-03-21

연번	연구과세명	부서명	직급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시작일	종료일
588	-	-	-	-	-	2020-06-22	2021-01-21
589	-	-	-	-	=	2020-06-22	2021-01-21
590	-	-	-	-	-	2020-06-22	2020-12-21
591	-	-	-	-	-	2020-06-22	2020-12-21
592	-	-	-	-	-	2020-06-22	2021-01-21
593	-	-	-	-	-	2020-06-22	2021-01-21
594	-	-	-	-	-	2020-06-22	2021-01-21
595	-	-	-	-	-	2020-06-22	2021-01-21
596	-	-	-	-	-	2020-06-22	2021-03-21
597	-	-	-	-	-	2020-06-22	2021-03-21
598	-	_	_	_	_	2020-04-01	2021-03-31
599	_	_	_	_	_	2020-08-03	2020-11-02
600	-	-	-	-	-	2020-06-29	2021-02-28
601	-	-	-	-	-	2020-06-29	2021-02-28
602	-	_	-	_	_	2020-06-29	2021-02-28
603	-	_	_		_	2020-06-29	2021-02-28
604	-	_	-	_	_	2020-06-29	2021-02-28
605	-	_	-	_	_	2020-06-29	2021-02-28
606	-	-	-	-	_	2020-06-29	2021-02-28
607	-	-	-	-	-	2020-06-29	2021-02-28
608	-	-	-	-	-	2020-06-29	2021-02-28
609	-	-	-	-	-	2020-06-29	2021-02-28
610	-	-	-	-	-	2020-06-29	2021-02-28
611	-	-	-	-	-	2020-06-29	2021-02-28
612	-	-	-	-	-	2020-06-29	2021-02-28
613	-	-	-	-	-	2020-08-24	2021-01-24
614	-	-	-	-	-	2020-03-01	2021-02-28
615	-	-	-	-	-	2020-08-01	2021-02-28
616	-	-	-	-	-	2020-07-01	2020-12-3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5조 및	○ 경징계(2명)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ㅇ통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사실에 기초한 정직	- 참여연구원으로 등재
	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연구결과물의 공동 저지로 등재한 AG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대해 논문연구윤리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도,	거쳐 공동자자 삭제 등
	- 금오공과대학교 ⊙부 교수 AG은 2014년 교내연구비	조치를 하기 바람
	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후 2018. 3. 동 과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 AH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	
	시켜 배우자와 업적평가 실적을 공유하는 등【붙임】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19. 7.까지 위 AG 등	
	교원 2명이 4개의 금오공과대학교 △단 주관 교내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연구비	
	집행서류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시켜 배우자와	
	업적평가 실적을 공유한 사실이 있음.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현황

(단위 : 천원)

					연	구책임.	자		특	수관계자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지원 기관	소속	직급	성명	연구 책임자 의 의 관계	성명	소속 및 직급	학술지 게재시기	비고
1	-	2014-05-01~ 2015-04-30	10,000	금오공대 △단	⊙부	-	AG	배우자	АН	-	2018.3.	공동저자 등재
2	-	2016-05-01~ 2017-04-30	5,200	금오공대 △단	⊙부	-	AG	배우자	АН	-	2019.1.	"
3	-	2017-05-01~ 2018-04-30	5,000	금오공대 △단	⊙부	-	AG	배우자	АН	-	2019.4.	"
4	-	2019-05-01~ 2020-04-30	9,000	금오공대 △단	▲ 과	-	-	배우자	-	-	2019.7.	"
	합 계		29,200				2명, 4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연구비 소모품 구매 부적정	
	○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24조 제2항에	ㅇ경고(1명)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2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구매요청(중앙구	
	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당 추정가격	
	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	
	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I은 2018. 1. 22.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 요청해야 할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19일 간격으로 4,980,000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붙임】"연구비 소모품(연구책임자:교수 AI)	
	직접 구매 현황"과 같이 2017. 10.부터 2021. 4.까지	
	연구책임자 교수 AI은 14개의 교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앙구매를 요청해야 할 만큼 충분한	
	소모품 구매계획이 있음에도 평균 24일 간격으로	
	연구 소모품을 특정업체(육육)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총 76건, 328,408,088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고,	
	· 특히, 2018. 4. 11. ●● 연구과제 연구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거래를	
	통해 합계 7,701,124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중앙구매	
	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구비 소모품(연구책임자 : 교수 AI) 직접 구매 현황

(단위 : 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카드결 제일자 (계좌이 체일)	승인 시간	결제금액	거래처명	비고 (직전 결제 후 경과일)
	2017.10.1.~	••	2018-01-22	12:10:59	4,980,000	슈슈	
-	2018.9.30.		2018-02-10	10:37:12	4,980,000	දා දා	19일
	소계				9,960,000		
			2018-01-12	12:00:34	4,940,000	ଫ ୁ	
			2018-03-19 (계좌이체)		4,500,000	슈슈	66일
	2017.12.1.~		2018-04-11	17:09:07	4,553,524	ආ ආ	23일
-	2018.11.30.	••	2018-04-11 (계좌이체)		3,147,600	දූ ද	0일
			2018-04-13 (계좌이체)		1,638,545	4 4	2일
			2018-05-02	13:43:33	4,980,000	භූ	19일
	소계				23,759,669		
			2018-03-23 (계좌이체)		4,980,000	4	
			2018-04-09 (계좌이체)		4,970,000	දු දු	17일
			2018-04-24	11:53:59	4,950,000	44	15일
			2018-05-12	11:10:53	4,970,000	4	18일
			2018-06-05	15:13:20	4,970,000	슈슈	24일
	2018.1.1.~ 2018.12.31.		2018-07-17	11:20:18	4,990,000	4 2 42	42일
-	2016.12.31. (1년차)	-	2018-08-09	14:55:44	2,390,000	දු දු	23일
			2018-09-05	12:01:10	4,980,000	දු දු	27일
			2018-10-31	11:36:06	3,950,000	දු දු	56일
			2018-11-23	11:31:29	2,980,000	දු දු	23일
			2018-12-05	11:53:03	3,000,000	44	12일
			2018-12-18	11:36:30	1,600,000	44	13일
	소계				48,730,000		
	2018.5.1.~		2018-06-26	13:49:44	4,980,000	අ	
-	2019.4.30.	△단	2018-08-09	14:53:30	1,620,000	4 4	44일
	소계				6,600,000		
	2018.6.1.~		2018-06-16	12:03:19	4,980,000	4 2	
-	2018.6.1.~ 2019.5.31. (1년차)	-	2018-07-09 (계좌이체)		4,970,000	44	23일

			키드거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카드결 제일자 (계좌이 체일)	승인 시간	결제금액	거래처명	비고 (직전 결제 후 경과일)
			2018-08-08 (계좌이체)		4,950,000	දු දු	30일
			2018-08-22	11:17:55	4,950,000	424	14일
			2018-10-03	12:08:23	3,000,000	424	56일
	소계				22,850,000		
			2018-10-02 (계좌이체)		4,950,000	දු දු	
			2018-10-12	15:01:28	4,970,000	ඇ ඇ	10일
_	2018.9.1.~ 2019.2.28.	_	2018-11-19	12:49:54	2,000,000	ඇී දුර	38일
_	(1년차)	_	2018-12-05	11:54:32	1,950,000	ආ ආ	16일
			2019-01-02	12:01:53	4,980,000	ආ ආ	28일
			2019-01-30	14:31:43	500,000	දු දු	28일
	소계				19,350,000		
_	2018.11.1.~ 2019.7.31.	••	2018-12-18	11:37:37	3,360,000	ආ ආ	
-	(1년차)		2019-01-15	13:09:48	3,550,000	ඇද	28일
	소계				6,910,000		
			2019-02-16	11:52:53	4,980,000	ආ ආ	
		-	2019-02-27	11:52:58	4,571,219	4242	11일
			2019-03-13	11:33:54	4,900,000	ආ ආ	14일
	2019.1.1.~ 2020.3.31. (2년차)		2019-03-27 (계좌이체)		4,950,000	ද්දා ද්දා	14일
-			2019-04-23	11:52:36	4,970,000	ඇ ඇ	27일
	(- = 1)		2019-05-24	16:44:53	4,650,000	ඇ ඇ	31일
			2019-07-24	10:50:46	4,650,000	ආ ආ	61일
			2019-08-12	12:04:39	4,900,000	ආ ආ	19일
			2019-10-28	13:58:14	4,970,000	фф	77일
	소계				43,541,219		
	2019.3.1.~		2019-04-19	10:23:03	4,870,000	දු දු	
-	2019.8.31. (2년차)	-	2019-05-18	11:26:23	4,000,000	ආ ආ	29일
	(1)		2019-05-29	11:36:56	4,960,000	දර දර	11일
	소계				13,830,000		
			2019-07-10	11:18:31	4,960,000	දු දු	
			2019-08-08	12:57:15	4,800,000	ආ ආ	29일
	2017		2019-08-23	10:12:38	4,950,000	슈슈	15일
-	2019.6.1.~ 2020.8.31.	••	2019-09-02	16:01:50	4,980,000	දු දු	10일
			2019-09-18	17:58:09	4,970,000	දු දු	16일
			2019-09-30	10:00:01	4,950,000	දුරු දුරු	12일
			2019-10-16	14:13:22	4,980,000	ඇ ඇ	16일
	소계				34,590,000		
-	2019.12.4.~ 2020.12.3.	••	2019-12-21	12:10:20	4,950,000	දු දු	

			-))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카드결 제일자 (계좌이 체일)	승인 시간	결제금액	거래처명	비고 (직전 결제 후 경과일)					
			2019-12-30	12:37:38	4,980,000	ආ ආ	9일					
			2020-01-17	17:55:36	4,960,000	ආ ආ	18일					
	(1년차)		2020-01-21	13:30:07	4,400,000	ආ ආ	4일					
	(1 ¹ 2 ⁷ f)		2020-03-06	10:55:46	1,300,000	ආආ	45일					
			2020-03-27	13:37:57	3,500,000	ආ ආ	21일					
			2020-04-09	12:17:25	3,700,000	ආ ආ	13일					
	소계				27,790,000							
			2020-06-25	16:42:10	4,980,000	ආ ආ						
			2020-06-29	14:16:41	4,950,000	අද	4일					
-	2020.6.1.~ 2021.5.31.		2020-08-06	12:27:38	4,950,000	ආ ආ	38일					
			2020-08-26	11:54:00	3,377,200	අ	20일					
			2020-09-28	17:39:01	4,860,000	ආ ආ	33일					
	소계				23,117,200							
			2020-12-18	14:59:07	4,970,000	424						
	2020.11.20.~		2021-01-12	12:07:45	4,870,000	424	25일					
-	2021.11.19.	••						2021-01-21	12:17:36	4,200,000	ද දි	9일
			2021-03-22	12:22:26	4,980,000	424	60일					
	소계				19,020,000							
			2020-12-09	12:05:27	4,980,000	424						
			2020-12-16	13:30:57	3,690,000	424	7일					
	2020.12.4.~ 2021.12.3.	••	2021-01-18	12:54:01	4,950,000	424	33일					
	2021.12.3. (2년차)		2021-02-03	14:12:58	4,800,000	424	16일					
			2021-02-22	11:55:23	4,970,000	424	19일					
			2021-04-01	12:00:55	4,970,000	424	38일					
	소계				28,360,000							
총합계(76건)				328,408,088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6	△단 수당 관련 의견수렴 절차 미흡	
	○ 「근로기준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ㅇ주의(2명)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2018. 2. 21.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 개정(2018.3.1.부터 시행)을	
	통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 오던 중, 조직내 갈등**을	
	주된 이유로 2020. 5. 8. 특정업무경비 지급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 특정업무경비 폐지 계획(안)'	
	(△단장 전결) 수립 후 2020. 6. 24. '△단 계약직원	
	인건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2020.7.1.부터 시행)하여	
	△단 직원의 수당(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임에도 수당 폐지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8. 3. 연구비담당(5만원/월, 지급인원 8명)으로 시작하여, 2019. 3.부터는 연구비담당(8만원/월), 예산업무담당(8만원/월), 감사업무담당(5만원/월), 재무결산업무담당(5만원/월), 여론 동향담당(5만원/월) 등 지급인원 15~17명 정도로 확대(2020.5. 기준 △단 현원 39명)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여부 관련 △단 내 구성원 간 업무 갈등 발생	

지민이 증계만 국・중합학교 교적권의 적구혈당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단)이 승계하고, △단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37	직무발명 미신고	
△단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 「발명진흥법」제10조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o	주의(1명)
지난이 중계단 국・중합학교 교적권의 석구혈당에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단)이 승계하고, ㅇ	시정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규정에 따라 함보 등 조물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대한 특허권 등은 △단의 소유로 하며, 「금오공과	규정에 따라 권리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직무발명"이라 함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교직원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이 금오공과대학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 또는 정부부처와 그	
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따르면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없이 △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J은 2018.10.1.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음.		등록한 사실이 있음.	
* 출원번호 : -('16.5.10. 출원), 등록번호 : -('18.10.1. 등록)		* 출원번호 : -('16.5.10. 출원), 등록번호 : -('18.10.1. 등록)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8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제5조, 제7조 및	ㅇ 주의(10명)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및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K은 2017. 5. 26.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2015.9.14.)보다 620일 경과하여 제출	
	하는 등 【붙임】"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 AK	
	등 10명의 교원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620	
	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붙임】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현황

연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기간	연구비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
번		1 1		21110	시작일	종료일		16/16	1166	일수
1	▼부	-	AK	-	2015.05.15	2015.09.14	10,000	2015.09.14	2017.05.26	620
2	-	-	-	-	2015.12.01	2016.05.31	10,000	2016.05.31	2017.05.29	363
3	-	-	-	-	2016.04.01	2017.03.31	10,000	2017.03.31	2017.05.16	46
4	-	-	-	-	2016.06.01	2016.10.30	10,000	2016.10.30	2017.05.12	194
5	-	-	-	-	2016.07.01	2016.11.30	8,600	2016.11.30	2017.01.09	40
6	-	-	-	-	2016.07.01	2017.02.28	7,000	2017.02.28	2017.04.03	34
7	▼부	-	AK	-	2016.09.01	2017.01.31	10,000	2017.01.31	2017.05.26	115
8	-	-	-	-	2016.11.01	2017.02.28	10,000	2017.02.28	2017.03.30	30
9	-	-	-	-	2016.11.01	2017.03.31	10,000	2017.03.31	2017.05.15	45
10	-	-	-	-	2017.09.01	2018.08.31	8,000	2018.08.31	2017.11.21	21
11	-	-	-	-	2018.11.01	2019.03.31	10,000	2019.03.31	2019.05.07	37
12	-	-	-	-	2019.12.01	2020.03.31	5,000	2020.03.31	2020.04.29	29
13	-	-	-	-	2020.05.01	2020.10.31	10,000	2020.10.31	2020.11.23	24
			합	계			118,6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9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제6조,	ㅇ 경고(4명)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중인 교원에 대	ㅇ 주의(4명)
	하여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국외 연수자로 선정	ㅇ 시정(회수)
	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기간 1개월당	- 연구결과물을 제출 하지 않은 교수 AL
	\$1,000를 지원하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와	으로부터 연구비
	동시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키이 이 최스키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외 전문학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한 후 1부를	관련화계에 세입조치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하기 바람
	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부 AL은 2017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연구비(경비) 12,000천원을 지급받고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위 AL 등 교원	
	8명(연구비 지급 2명, 24,000천원)은 연구년 종료 후 연구	
	결과물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2021. 4. 감사일 현재	
	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붙임】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

연		7) 7	23 = 2	시 그 네 게 뭐	연구	기간	연구비	결과물	_1) -> ^1	초과
번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시작일	종료일	(경비)	제출기한	제출일	일수
1	◈부	-	AL	-	2017.09.01	2018.08.31	12,000	2020.08.31	미제출	8개월
2	-	-	-	-	2017.03.01	2018.02.28	-	2020.02.28	미제출	1년 2개월
3	-	-	-	-	2017.09.01	2018.08.31	-	2020.08.31	미제출	8개월
4	-	-	-	-	2018.02.01	2019.01.31	-	2021.01.31	미제출	3개월
5	-	-	-	-	2016.08.01	2017.07.31	1	2019.07.31	2021.04.05	1년 8개월
6	-	-	-	-	2017.03.01	2018.02.28	1	2020.02.28	2021.02.02	11개월
7	-	-	-	-	2017.03.01	2018.02.28	-	2020.02.28	2021.03.30	1년 1개월
8	-	-	-	-	2017.12.18	2018.12.17	12,000	2020.12.17	2021.04.13	3개월
			함	계			24,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0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ㅇ 경징계(8명)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ㅇ 경고(3명)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ㅇ 주의(6명)
	아니 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ㅇ 시정(회수)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 연구 시작 전 이미 학술지 게제 접수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확정된 논문을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교수 AT 등 8명으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등을	로부터 연구비
	준수하여야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합계 57,000천원을 화수하여 관련회계에
	규정」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세입조치하기 바람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첨부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의	
	연구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중점연구과제는 3년	
	이내에 SCI급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고, 해당 논문의	
	별쇄본 또는 논문 사본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부당한 행위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및 허위로 연구 보고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금오	
	공과대학교는 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를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 ◇과 AM은 2015년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신청하여 연구비 7,000천원을 지급받고, 2014. 8. 8.	
	학술지에 게재가 이미 확정된 논문을 2015. 11. 6.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 【붙임】 "기 학술지 게재	
	접수 및 확정 논문의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지원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비를 지급	
	받은 위 AM 등 교원 8명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기간 시작일 전 이미 학술지에 게재 접수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금오공과대학교 △단은 위 사실에 대하여 연구	
	결과물(논문) 제출 당시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기 지급된 교내 학술연구비 57,000천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붙임】

기 학술지 게재 접수 및 확정 논문의 교내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지원 현황

연번	지원 년도		지원	·대상		연구과제			학술지 게	재			논문 제출일
컨텐	년도	소	속	직	성 명	과제명	연구기간	지원액	논 문 명	접수일	확정일	게제년월	제출일
1	2015	◇ -	과	-	AM	-	2015.5.1.~ 2016.4.30.	7,000	-	2013.10.28	2014.08.08	2015.10	2015.11.06
2	2015	_		-	-	-	2015.5.1.~ 2016.4.30.	7,000	-	2015.03.03	2015.03.15	2015.05	2015.07.22
3	2015	-		-	-	-	2015.5.1.~ 2015.9.30.	10,000	-	2015.02.09	2015.06.02	2015.06	2015.07.10
4	2017	-		-	-	-	2017.5.1.~ 2018.4.30.	5,000	-	2016.02.22	2016.11.18	2017.11	2017.11.10
5	2017	-		-	-	-	2017.5.1.~ 2018.4.30.	5,000	-	2016.10.10	2017.09.03	2017.11	2017.12.21
6	2017	-		-	-	-	2017.5.1.~ 2018.4.30.	5,000	-	2017.03.07	2017.10.15	2017.11	2017.12.08
7	2019	_		-	-	-	2019.5.1.~ 2020.4.30.	9,000	-	2018.03.19	2019.07.06	2019.07	2019.12.24
8	2020	-		-	-	-	2020.5.1.~ 2021.4.30.	9,000	-	2020.02.26	2020.06.09	2020.07	2020.11.17
		합 :	계		8명			57,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1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 「국고금 관리법」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 경고(6명)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립대학	
	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상의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년도 전기공사의 설계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예산액 180,000천원 보다	
	43,940천원을 초과(초과율 24.4%)하여 실시설계하는	
	등【붙임】"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건의 설계	
	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예산액 보다	
	합계 616,665천원을 초과(초과율 평균 10.0%)하여 실시	
	설계한 사실이 있음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실시 현황

순	연도	공사명	예산액	설계금액	초과액	초과율	교육부 사전협의
1	2018	-	180,000	223,940	43,940	24.4%	미협의
2	2019	-	680,000	755,371	75,371	11.1%	미협의
3	2020	-	3,693,000	3,985,851	292,851	7.9%	미협의
4	2020	-	857,000	960,795	103,795	12.1%	미협의
5	2020	-	750,000	850,708	100,708	13.4%	미협의
	1	합 계	6,160,000	6,776,665	616,665	1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및「같은법 시행령」	○주의(7명)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기성부분 및 준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4. 24. ㈜▷▷과 계약한 건축	
	공사(계약금액 4,832,113천원, 준공일 2019.12.20.)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	
	하지 않고, 2019. 6. 30. 설계변경 시 사전에 정산하여	
	정산금 132,103천원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붙임】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현황" 과 같이 2018. 4.부터 2020. 5.까지	
	위 건축공사 등 9건의 공사에 계상된 법정경비를	
	사후정산 하지 않고 사전에 정산하여 정산액 합계	
	226,677천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현황

(단위:천원)

								(= ,,, = =)
순	연도	공사명	계약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일	사전정산일 (설계변경일)	정산액 (공사비 사용)
1	2018	-	\triangleright	4,832,113	2018.04.24	2019.12.20	2019.06.30	132,103
2	2018	-	(합)◇◇	626,250	2018.04.24	2019.12.20	2019.12.11	29,303
3	2018	-	-	315,726	2018.04.24	2019.12.20	2019.12.11	15,300
4	2018	-	-	237,060	2018.04.24	2019.12.29	2019.12.11	6,642
5	2018	-	-	324,420	2018.04.30	2019.12.29	2019.12.11	5,149
6	2020	-	-	302,993	2020.04.27	2020.12.18	2020.12.09	20,836
7	2020	-	-	442,927	2020.04.29	2020.12.26	2020.12.09	8,505
8	2020	-	-	207,843	2020.05.07	2020.12.18	2020.12.09	2,948
9	2020	-	-	146,975	2020.05.07	2020.12.26	2020.12.09	5,891
		합 계		7,436,307				226,677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	신축 국제교육관 공간 미활용 등 관리 부적정	
	○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91호, 2016. 10. 21.)」	○ 기관경고
	제1조, 제3조 및 11조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은	ㅇ통보
	국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 공실로 관리하고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있는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용도를 확정하고
	제고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물량을 과도하게	용도에 맞게 실험실을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구축하기 바람
	하며, 「금오공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 등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제	
	교육관 신축 사업(규모 5,130㎡, 총사업비 9,985백만원, 기간	
	: 2017~2019)'을 추진하면서 동 건물 내 국제공동실험실	
	(277.2㎡) 공간이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	
	설계에 반영된 천장텍스(59.8㎡) 및 PVC타일 바닥재	
	(277.2㎡)를 시공하지 않고 추후 용도가 확정되면 시공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2019. 12. 10.)하여 준공(2019. 12. 20.)	
	하였음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주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 후 498일이 지난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공실로 관	
	리한 사실이 있음	

[참고]

국제교육관 내 국제공동실험실 현황 사진



< 천장 및 바닥 시공 모습 >



< 천장 단열재 시공 모습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연번 44	지 적 사 항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 「건축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7. 11. 7. 허가권자과 협의 없이 ▼부 풍동실험실 앞 공터에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3m×9m, 27㎡)을 설치하고, 이후 허가권자에게 공사완료 통보 없이 2021. 4. 감사일 현재까지 ▼부 풍동실험 자료보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이기관주의 이통보 - 현재 설치된 가설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5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미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ㅇ기관주의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0 —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연구 활동종사자가 근로자의 경우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 , 22 ,2
	4시간 이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10. 11. 2018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자 62명 중 28명이 미이수하여 미이수율이	
	45%임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이수율이 평균 56%	
	임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현황

구	<u>분</u>	교육일시	대상인원	이수 인원	미이수 인원	미이수율	비고
2018-2학기	신규교육	2018. 10. 11	62	34	28	45%	
2019-2학기	신규교육	2019. 11. 29	46	13	33	72%	
	합 계		108	47	61	56%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6	지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20. 5. 7. ㈜▽▽과 계약한 '신평동 캠퍼스 생활관 B동 리모델링 소방공사(계약금액 146,975천원)'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시 내열전선 등의 단가를 낙찰률(88.339%)을 적용하지 않고 계상 하여 공사비 49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적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신평동 캠퍼스 생활관B동 리모델링 소방공사' 등 2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 품목의 단가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상하여 공사비 합계 595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3명) 시정(회수)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595천원을 해당 사공업체들로부터 각각 화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적용 부적정 현황

연번	공사명	계약일 /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	낙찰률	품명	규격	단위	적용 단가 (원)	낙찰률 적용 정상단가 (원)	광비과다 지급액* (천원)
					내열전선	FR-3, 5C×2.5mm²	M	2,155	1,904	
					알루미늄 덕트	사각, 50*35	M	3,721	3,287	
1	신평동 캠퍼스 생활관 B동	2020.5.7./	146,975	88.399%	강제 전선관	아연도 28mm	M	2,669	2,358	496
	리모델링 소방공사	2020.12.18.	<(주) ▽ ▽ >	001077,0	자동폐쇄장 치		개	105,000	92,756	220
					전원반	20A	개	400,000	353,356	
					방화문 순위조절기		개	25,000	22,085	
2	신평동 캠퍼스 생활관 B동	2020.5.7./	207,843	88.35%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3C×4mm²	M	1,727	1,526	99
2	생활판 Bs 리모델링 통신공사	2020.12.18.	<->	00.33%	광컨버터	SFC-2000	EA	200,000	176,760	99
		합 겨]	•						595

^{*} 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되,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1. 18. □ 환경(대표 AN)과 계약한 '테크노관 교수연구실 석면텍스 철거공사(계약금액 153,843천원)'를 준공처리 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증빙서류가 없는 각반·안전조끼 구입비 917천원을 준공 시 감액·정산하지 않는 등【붙임】"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21. 1.까지 위 '테크노관 교수연구실 석면텍스 철거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 합계 4,931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시정(회수) 감액·정산하지 아나한 안전관리비 합계 4,931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들로부터 화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안전관리	기비내열		(인기 : 신천)
연 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당사자	계상액	정산 필요액	중빙 서류	정산필요 품목
1	테크노관 교수연구실 석면텍스 철거공사	′18.1.18.	′18.2.14.	153,843	< < < 한경(주) AN	3,125	917	없음	각반 24개 안전조끼 8개
2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소방공사	′18.4.24.	′19.12.29.	234,190	-	5,905	457	없음	방진마스크 70개
3	도서관 로비(1층) 환경개선공사	′18.6.18.	′18.8.18.	169,038	-	4,544	563	없음	안전모 5개 안전화 5개
4	학생식당 석면 천 장재 및 외벽 철거 공사	′19.6.10.	′19.7.9.	42,124	-	1,168	56	없음	안전모 7개
5	글로벌관 실험실(556호) 구축 및 기타공사	′19.8.12.	′19.9.6.	39,623	-	1,237	372	없음	안전화 2개 안전모 2개 방진마스크 1개 보안경 10개
6	대외협력관외 5개동 천장재 교체공사	′19.9.20.	′19.10. 2 5.	69,223	-	2,346	294	목적 외사 용	신호수 2명
7	번처창업관외 4개동 석면철거 전기공사	′20.1.3.	′20.2.13.	59,943	-	1,067	568	없음	안전화 3개 안전모 3개 안전벨트 3개 각반 8개 보안경 1개 방진마스크 12개
8	노후개별생난방기(CHP) 교체 전기공사	′20.1.15.	′20.3.9.	61,116	-	913	45	없음	방진마스크 4개
9	생활관 관리동 식당 리모델링 전기공사	′20.1.21.	′20.2.20.	47,530	-	1,056	29	없음	보안경 2개 각반 2개
10	학생회관 교직원식당 리모델링 전기공사	′20.1.22.	′20.2.20.	47,827	-	979	230	없음	안전화 2개 안전모 2개 각반 4개
11	글로벌관 시청각실 및 계단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20.3.12.	′20.4.6.	79,172	-	2,155	724	적 용 불가	화재감시자 4일
12	학생회관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20.7.29.	′20.10.2.	26,636	-	465	165	없음	사다리지지대 2개 안전조끼 4개
13	학생회관 중정 외벽 개선공사	′20.11.11	′20.12.7.	47,204	-	1,223	274	없음	안전로프 1개 손소독젤 2개 손소속스프레이 2개 체온계 1개
14	테크노관외 2개동 석면 천장재 철거 공사	′21.1.18.	′21.2.15.	109,787	-	3,316	237	없음	안전조끼 8개 각반 24개
	합 계						4,931		

지설공사 시공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55조 제6항 및「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7조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계약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결과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정산ㆍ감액하거나,재시공 지시를 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4. 24. (합)★★(대표 AO)와계약한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1차 전기공사(계약금액 240,000천원)'를 추진하면서 '전기맨홀 뚜껑 및 틀'이비규격 제품(KS표준)으로 시공되었는데도 그대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55조 제6항 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제27조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계약서·설계도서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
준공처리 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4.부터 2018. 12.까지 준공된 위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1차 전기공사'등 총 5건 의 공사에서 당초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는 데도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합계 4,025천원	준공검사 결과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정산· 감액하거나, 재시공 지시를 하도록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4. 24. (합)◇◇(대표 AO)와계약한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1차 전기공사(계약금액240,000천원)'를 추진하면서 '전기맨홀 뚜껑 및 틀'이비규격 제품(KS표준)으로 시공되었는데도 그대로준공처리 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연 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 상대자 (대표자)	시공 부적정 내역				
		공사기간	계약 금액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용	공사비 과다 지급액*	비고
1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전기공사 (1차)	′18.4.24. ′18.5.1. ′18.12.14.	240,000	(합)◇◇ (AO)	전기맨홀 뚜껑 및 틀 (1,000*1,000*1,000㎜, 1개)	전기맨홀 뚜껑 및 틀 (1,000*1,000*1,000㎜, 1개, KS표준**)	비규격 제품 시공	441	재시공
2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통신공사 (1차)	′18.4.24. ′18.5.1. ′18.12.14.	138,000	-	통신맨홀 뚜껑 및 틀 (450*950*700㎜, 1개)	통신맨홀 뚜껑 및 틀 (450*950*700㎜, 1개, KS표준)	비규격 제품 시공	315	재시공
3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전기공사 (2차)	′18.4.24. ′19.1.4. ′19.12.20.	386,250	(합)◇◇ (AO)	강제전선관 노무비 (나사 있는 금속관 시공, 97M)	강제전선관 노무비 (무나사 금속관 시공, 97M)	규격변경 시공	1,562	재시공
4	국제공학교육관 지열시스템 구매 설치	'19.1.29. '19.2.11. '19.12.23.	151,402	-	강제전선관 노무비 (나사 있는 금속관 시공, 50M)	강제전선관 노무비 (무나사 금속관 시공, 50M)	규격변경 시공	566	재시공
5	신평동캠퍼스 생활관B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20.4.27. ′20.5.1. ′20.12.18.	302,993	-	강제전선관 노무비 (나사 있는 금속관 시공, 72M)	강제전선관 노무비 (무나사 금속관 시공, 72M)	규격변경 시공	1,141	재시공
		합 계						4,025	

^{*} 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

^{**} 전기 통신 맨홀 뚜껑 및 틀: KS표준이 폐지되어 단체표준(주물조합)으로 변경(2014.2.28. 시행)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9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주의(3명)
	제61조 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 2. 22. 준공한 '교수연구실	
	(테크노관, 디지털관) 천장텍스 교체공사(계약금액	
	135,865천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붙임]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20. 2.까지 준공된 위 '교수연구실(테크노관, 디지털관) 천장텍스 교체공사' 등 16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순 번	공 사 명	계약 금액	계약업체	준공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종 검사	하자검사 조서
1	교수연구실(테크노관, 디지털관) 천장 텍스 교체공사	135,865	-	2018.2.22	2018.2.23 2019.2.22	미실시	미작성
2	교수연구실 테크노관 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92,513	-	2018.2.14	2018.2.14 2020.2.13	실시	미작성
3	학생회관 천장텍스 설치공사	80,090	-	2018.5.18	2018.5.18 2019.5.17	실시	미작성
4	도서관 로비(1층) 환경개선공사	169,037	-	2018.8.18	2018.8.29 2020.8.28	실시	미작성
5	학생회관 분식당 및 체육실 천장 개선 공사	41,978	-	2018.8.23	2018.8.29 2020.8.28	실시	미작성
6	도서관외 2개동 내외부 도장공사	73,498	-	2018.9.5	2018.9.5 2019.9.4	실시	미작성
7	테크노관외 1개동 복도 환경개선공사	30,589	-	2018.12.3	2018.12.3 2019.12.2	실시	미작성
8	학내 차선 도색공사	98,545	-	2018.9.14	2018.9.14 2019.9.13	실시	미작성
9	테크노관 및 디지털관 천장텍스 설치 공사	149,111	-	2019.2.25	2019.2.27 2020.2.26	미실시	미작성
10	생활관 푸름관 3, 4동 도장공사	104,090	-	2019.8.30	2019.9.9 2020.9.8	미실시	미작성
11	신평동캠퍼스 □원 창호교체 관급자 재 금속제창 구매	129,488	-	2018.9.5	2018.9.14 2020.9.13	실시	미작성
12	테크노관외 3개동 출입문 및 기타 도장공사	33,743	-	2019.9.5	2019.9.6 2020.9.5	실시	미작성
13	생활관 푸름관 3,4동 외벽단열재 보강 공사	288,827	-	2019.9.5	2019.9.9 2020.9.8	실시	미작성
14	글로벌관 실험실(556호)구축 및 기타 공사	39,622	-	2019.9.9	2019.9.9 2020.9.8	실시	미작성
15	대외협력관외 5개동 천장재 교체공사	69,682	-	2019.10.28	2019.11.5 2020.11.4	실시	미작성
16	벤처창업관외 3개동 천장텍스 설치 공사	154,602	-	2020.2.25	2020.2.26 2021.2.25	미실시	미작성